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1654-0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3 개정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영유아통계

통계청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사업 개요

추진 목적

통계작성에 필요한 기획부터 조사, 자료처리, 통계공표 및 자료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제공

통계 선정

· 표준매뉴얼을 활용한 생산대행 및 기술지원 중 발생한 개선 사항 사전 파악

· 외부 수요 및 내부 협의체를 통해 개발·개정 매뉴얼 선정

협업을 통한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통계청

개발·개정 매뉴얼 선정
표준매뉴얼 TF 구성·운영
관련기관 협력관계 조율
표준매뉴얼 배포

지방통계청

생산대행·기술지원 수요 파악
세부실시계획 수립
표준매뉴얼 TF 참여
조사 실시 또는 통계 작성

지자체

통계수요 및 정책활용 계획 제출
사업예산 편성 및 관리
계속작성 예산 확보
매뉴얼 활용 통계 작성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현황

2023

- 개정 일자리종합실태조사 | 무안
- 개정 귀농귀촌실태조사 | 고흥
- 개정 영유아통계 | 울산 울주군
- 개정 노인등록통계 | 경상북도

2022

- 개정 일자리인식실태조사 | 부산 연제구
- 개정 특산물실태조사 | 해남
- 개정 청년통계 | 원주
- 개정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수원, 영암

2021

- 개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 군포
- 개발 농업실태조사 | 무주
-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조사 | 함양

2020

- 개발 장애인통계 | 성남
  - 시범 농업실태조사 | 담양
  - 시범 어가실태조사 | 제주

2019

- 개발 일자리종합실태조사 | 김해 , 동해
- 개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세종, 제주, 남원
- 개발 청소년사회환경조사 | 완주, 양평
- 개발 다문화 · 외국인가구통계 | 안산, 경산

2018

- 개발 노인등록통계 | 대구, 울산
- 개발 청년통계 | 충남, 광양
- 개발 영유아통계 | 경기
- 개발 경제지표조사 | 평택, 진천
- 개발 귀농귀촌실태조사 | 곡성
- 개발 노인실태조사 | 영덕, 합천

2017

- 개발 일자리인식실태조사 | 천안 세종
- 개발 복지실태조사 | 여주, 양산
- 개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조사 | 아산, 인천 남구
- 개발 특산물실태조사 | 장흥, 광양
- 개발 서비스업실태조사 | 춘천

▶ 관광실태조사('17), 창업통계('18), 여성통계('19)는 작성 및 활용 중지

조사통계와 행정통계 비교

	조사통계	행정통계
기 획	수요조사, 기본계획수립(조사목적, 필요성, 조사대상, 추진일정), 이용가능 통계 유무 등(유사 중복 통계 여부)	행정자료 유무, 행정 용어 정의, 행정자료 주기 및 갱신여부 파악, 항목선정 및 결과표 사전 작성
조사준비	조사표 설계(이용자, 전문가 의견 수렴), 표본설계, 입력프로그램 개발, 시험조사, 실시계획수립, 조사표류 인쇄, 조사지침서 제작, 조사원 채용 및 교육, 홍보	기초자료 입수, 전문가 자문 및 관계 부처 협의
본 조 사	현장조사 실시	행정자료 입수, 원자료 DB 구축 및 자료정제
자료처리	자료처리 계획수립, 입력, 내용검토, 무응답 처리	통계 작성용 DB 구축, 분석용 DB구축 및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비 용	조사표 작성, 표본설계, 조사, 자료처리까지 상당히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고비용	조사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비교적 저렴
공표 및 제공	집계 분석, 공표, 표본오차 산정, 메타데이터 관리, 개인정보보호	행정자료의 한계점과 결측값 처리 방법 설명

조사통계(13종)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1년 개발	조사 목적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자녀교육,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 유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 내 거주하는 만 25~54세 여성
	조사 항목	경제활동 상태, 경력단절 경험 여부,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구직활동 여부·기간, 직업교육훈련, 구직경로, 구직 애로사항, 현재 일자리, 취업·창업 의사 등
경제지표조사 2018년 개발	조사 목적	급속히 변화하는 지역경제 상황과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수 1인 이상의 사업체 중 일부 산업을 제외한 사업체
	조사 항목	사업의 종류, 가동률, 생산설비의 적절성, 근로복지제도, 인력현황, 경영현황, 업종현황 및 전망 등
귀농귀촌실태조사 2018년 개발 2023년 개정	조사 목적	귀농·귀촌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여, 인구 유입을 위한 경쟁력 제고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통계기반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대상 기간 내 조사지역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가구 내 가구주 및 만 19세 이상 가구원
	조사 항목	전입시기·형태, 거처의 종류, 거주 지역 만족도, 사회적 관계, 행정·정책, 가구 소득 형태, 영농형태·규모 등

조사통계

조사명	구분	내용
노인실태조사 (2018년 개발)	조사 목적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식 및 생활현황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노인 서비스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 일반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개인
	조사 항목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상태, 치매, 보건복지, 일자리, 생활비, 노후 생활 등
농업실태조사 (2021년 개발)	조사 목적	농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래인력 양성 및 중장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 내 거주하는 농업인
	조사 항목	농업 종사 기간, 전·겸업, 경지 면적, 소득 및 지출, 주요 출하처, 농업교육, 귀농 여부, 농업 정책 등
복지실태조사 (2017년 개발)	조사 목적	지역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지역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조사 항목	주거 형태, 근로상태, 일자리, 소득 및 지출,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여가활동, 사회참여, 사회복지 인프라, 지역사회 만족도 등
서비스업실태조사 (2017년 개발)	조사 목적	지역상황을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지표생산, 전국 또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 가능한 경제지표를 제공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의 서비스업 조사대상 사업체
	조사 항목	사업장 현황 및 특징, 인력, 재무상황, 판매 및 마케팅, 경영전망 등
일자리인식실태조사 (2017년 개발, 2022년 개정)	조사 목적	시도 및 군민의 취업실태, 취업희망 내용 등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일자리 관련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표본가구의 만 19~64세 가구원
	조사 항목	직장(일)에 대한 만족도, 구직방법 및 경로, 일자리현황 및 전망, 구직 애로사항, 희망일자리,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정책 등

조사통계

일자리종합실태조사 2019년 개발 2023년 개정	조사 목적	기업현황 및 인력수급 실태, 근로조건 및 환경 등의 종합적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내 고용현황 진단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6개 대분류의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0인 이상인 사업체 중 일부업종을 제외한 사업체
	조사 항목	사업체 일반현황, 인력수급현황, 체감경기, 매출규모, 인건비, 정책 및 근로환경, 회사 경영실태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조사 2019년 개발 2021년 개정	조사 목적	전통시장·상점가의 일반현황 및 경영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지원시책 수립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사업체
	조사 항목	사업체 현황, 프랜차이즈 가맹점 현황, 화재보험 가입 여부, 사업의 종류, 임차료, 연간 인건비, 주차환경, 운영 애로사항 등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9년 개발 2022년 개정	조사 목적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정책 및 일자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 내 일반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가구원
	조사 항목	주거와 교통, 1인 가구 여부, 결혼관, 적정 자녀 수, 출산·육아 대책, 교육, 건강, 문화와 여가, 삶의 질, 일자리, 경제 등
청소년사회환경조사 2019년 개발	조사 목적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 소재 초(4~6학년)·중·고등학교 재학생(특수학교 및 분교 재학생 제외)
	조사 항목	건강, 정서, 스트레스, 학교생활 만족도, 장래희망, 직업 선택 기준, 진로 활동 경험, 여가, 청소년 시설, 아르바이트 경험, 학교 폭력, 성폭력, 경제적 수준 및 동네환경 등
특산물실태조사 2017년 개발 2022년 개정	조사 목적	지역 특산물에 대한 실태 파악으로 특산물 육성 및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지역 맞춤형 정책수립에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에 거주하며 특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가
	조사 항목	특산물 생산 경력·규모, 전·겸업 여부, 주 종사 분야, 농기계 보유 현황, 영농시설 보유 현황, 조직·판매·유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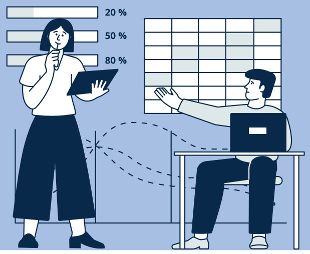

행정통계(5종)

통계	구분	내용
노인등록통계 2018년 개발 2023년 개정	작성 목적	빠른 고령화 및 출산율 저조로 부양비가 증가하는 등 노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
	작성 대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주요 통계표	노인 인구·가구, 사망률, 전입·전출, 장래노인인구 추이, 주택 소유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학대 현황 등
다문화·외국인 가구통계 2019년 개발	작성 목적	다문화·외국인가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외국인가구 삶의 질 향상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작성 대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외국인 가구 및 가구원
	주요 통계표	다문화·외국인 인구·가구 현황, 혼인상태, 출생아 수, 경제 활동, 주택 소유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등록,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 아동 재원 어린이집, 다문화 보육료 지원, 건강 등
영유아통계 2018년 개발 2023년 개정	작성 목적	영유아기의 인구·보건·사회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영유아 통계를 작성하여 저출산 및 보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 대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및 해당 가구
	주요 통계표	영유아인구, 영유아자녀 가구, 전입·전출, 출생아 수, 모 평균 출산연령, 모성보호수급자, 영유아가구 주택소유 현황, 건강검진, 아동복지시설 현황, 어린이집 현황 등
장애인통계 2020년 개발	작성 목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구, 복지, 교육, 고용 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작성 대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주요 통계표	장애인 인구, 장애인 예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특수교육,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고용 등
청년통계 2018년 개발 2022년 개정	작성 목적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분석하여, 청년 정책수립 및 수행에 활용
	작성 대상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기관별 정책 대상으로 정한 청년 연령이 상이하여 가장 포괄적인 범위인 만 15~39세를 작성범위로 권고하나, 지자체 조례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
	주요 통계표	청년인구, 혼인상태, 전입·전출, 인구동향, 청년가구, 신혼부부, 주택소유, 일자리, 창업, 기초생활보장, 연금, 건강보험 등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이용안내

전자간행물 다운로드

· 국가통계포털 KOSIS - 온라인간행물 - 주제별 - 지역통계 -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 통계청(kostat.go.kr) - 정책정보 - 지역통계 - 지역통계표준화 - 표준매뉴얼

간행물 열람

통계도서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3층
나라셈도서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별관 4층
통계교육원도서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문의처 안내

통계청	전화번호	관할 지역
지역통계기획팀	042) 481-6988	
경인지방통계청	02) 2110-760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동북지방통계청	053) 609-650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강원지방통계지청	033) 258-3650	강원특별자치도
호남지방통계청	062) 370-6000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동남지방통계청	051) 850-330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지방통계청	042) 366-8114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Contents

Part
01. 통계 개요 ···· 1
제1절 행정통계 개요 ···· 3
제2절 영유아통계 개요 ···· 6

Part
02. 통계작성 기획 ···· 9
제1절 기본계획 수립 ···· 11
제2절 통계표 설계 ···· 15
2-1. 통계표 체계 ···· 15
2-2. 통계표 구성 ···· 16
2-3. 주요 통계표 ···· 18
제3절 통계작성 승인 신청 ···· 21
제4절 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 ···· 33
4-1. 행정자료 기본정보 수집 ···· 33
4-2. 행정자료 입수 ···· 34

Part
03. 통계표 작성 ···· 37

Part
04. 결과 분석 ········ 43

Part
05. 자료공표 및 관리 ········ 49

제1절 통계 이용자 서비스 ········ 51
제2절 개인정보 보호 ········ 52

Part
06. 부 록 ········ 55

1. 통계표 설명서 ········ 57
2. 주요 행정자료 서식 ········ 100
3. 작성계획(안) ········ 113
4. 지역통계 표준프로세스 준수율 점검표(행정통계) ········ 126

1 PART

통계 개요

제1절 **행정통계 개요**

제2절 **영유아통계 개요**

지역통계표준매뉴얼

영유아통계

01 통계 개요

제1절 행정통계 개요

일반 현황

- 개념: 통계작성을 위하여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주된 원천자료로 이용하여 통계적인 처리를 거치거나 다른 자료와의 연계·결합 등을 통해 생성한 자료 및 이를 집계하여 생산한 자료로 통계를 작성

- 통계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비교

구분	통계조사자료		행정자료
	전수조사*	표본조사**	
포괄범위	모집단 전체 대상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목표 모집단은 행정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
내용	광범위한 자료	심층·분석 주제에 적합	행정목적에 따라 제한적
개념/정의	사회경제적 분석 필요성에 기초	사회경제적 분석 필요성에 기초	행정적 필요성에 따름
품질관리	오차 최소화 설계 가능	상대적 저비용	주요항목 외에는 관리소홀
비용	고비용	상대적 저렴	조사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주기	5년	월간, 분기 또는 연간	월간 또는 연간 (행정프로그램에 따라 좌우)
시의성	조사 종료 1년 후 자료사용 가능	정기조사는 몇 주, 임시조사는 몇 달 내 결과 산출	자료입수 시기에 따라 월간, 분기 자료생산 가능
응답부담	전 국민, 전체 가구 대상	대상자에게는 크나 평균적으로는 적음	추가 부담 없음

* 전수조사란 통계조사에서 모집단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집단 구성원 각각에 대해 측정을 실시하는 조사
** 표본조사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그 표본에 대해서만 측정을 실시하는 조사

- 행정통계 개발의 한계점

  - (행정자료 자체의 한계) 행정자료는 당초 행정 본연의 목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통계작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용어 정의, 포괄범위 차이, 결측값 존재 등으로 표준화 작업 및 자료 정제 필요
  - (원행정자료 확보의 어려움) 「통계법」에 행정자료 활용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행정자료 보유기관이 행정자료 제공에 미온적임
  - (대용량 행정자료 처리·보완의 어려움) 입수한 대용량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측값 보완, 자료 간 연계·통합 등 통계적 가공처리에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함
  - (시의성 높은 통계생산 곤란) 월별, 분기별 등 보다 시의성 높은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최신 행정자료의 입수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

- 행정통계 개발의 기대 효과

  - (정책맞춤형 상세 통계 생산) 산업·직업 세부 분류별, 읍·면·동 등 소지역별 통계자료의 생산이 가능하고, 세부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데이터 생산 가능
  - (비용 절감 및 응답부담 경감) 기존의 조사통계 또는 새로운 통계수요가 발생할 경우 우선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작성 가능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무분별한 통계조사를 방지하고 통계작성 비용 절감과 조사대상자의 응답부담을 경감
  - (통계정확성 제고) 통계작성 시 보다 다양한 행정자료와의 연계·결합 등으로 행정통계의 정확성 제고

행정통계 작성 흐름도

업 무	추진 내용	주 체
통계작성 기획 기본계획 수립	• 통계조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배경, 작성개요, 소요예산 등	지자체
↓		
작성항목 설계	• 조사표 항목 선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 – 기본항목 선정 및 자율항목 개발	지자체 (대행기관)
↓		
통계작성 승인신청	• 통계작성 승인신청 자료 준비 및 의뢰 – 통계 작성개요, 기획서, 결과표 등	지자체
↓		
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	• 행정자료 입수 가능시기 파악 • 입수기관과 협의를 통한 자료 입수	지자체
↓		
통계표 작성 및 결과공표 통계표 작성 및 분석	• 데이터 정비 및 통계표 작성	지자체 (대행기관)
↓		
결과공표 및 자료제공	• 분석 결과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KOSIS, 홈페이지를 통한 통계표 게시	지자체

제2절 영유아통계 개요

일반현황

- 통계명 : 영유아 통계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가공통계

- 작성목적
  - 영유아기의 인구·보건·사회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영유아 통계를 작성하여 저출산 및 보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작성방법
  -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직접 입수 또는 집계하여 작성

- 작성 및 공표주기 : 2~3년 주기로 작성
  - 지속적인 영유아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자체 예산 및 인력을 감안하여 2~3년 주기로 작성·공표

- 개발 배경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역정책 수립 필요
  - 저출산 및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통계 개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단위의 영유아통계 개발 필요성 대두

활용분야

- 영유아 인구 및 가구의 특성, 출산, 보육, 복지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의 영유아 보육·교육 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영유아통계 현황

통계명	지역	작성여부	최초 연도	주기
경기도 영유아통계	경기도	○	2018	2년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통계	인천광역시 서구	○	2019	4년
울주군 영유아통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3	3년

관련 통계 간 사전 검토내용

- 관련 통계현황

구분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보육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기관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작성시작	2004	2004	2008
작성주기	1년	3년	3년
작성유형	보고통계	조사통계	조사통계
작성대상	전국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및 미취학아동 가구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공표범위	시도, 시군구	전국	전국

- 검토내용

  - 보육실태조사는 어린이집이 제공하고 있는 보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국단위 통계 공표를 하고 있어 시군구 단위에서는 활용에 한계

- 검토결과

  - 본 행정통계는 지역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유아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계표를 부문별로 균형 있게 배치

주요 개정 내용

- (작성방법)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기 조사자료를 기초로 구축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 또는 개별적으로 작성
- (수집자료원) 유아인구와 가구의 상태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고, 정책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료원을 제외
- (작성항목) 타 지방청의 작성항목 및 개정의견 등을 수렴하고 영유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통계표 구성 변경
  * 통계표 체계 변경 내역 참고
- (공통항목) 타 지자체와 비교가능하며, 변경불가한 필수항목으로 공통항목 정의 변경 및 재선정
-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으로 최신 내용 수록
  -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계작성 승인 신청 관련 내용 변경
  - 행정자료 우선활용 판단내역이 지자체 자체판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 변경

활용시 유의사항

- 표준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되, 작성기관별로 필요한 지표(통계표)와 예산, 일정 등을 고려하여 통계 작성을 기획하여야 함
- 기본항목 중 공통항목은 지역 간 비교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통계표 구성 시 포함할 것을 권고함
- 기 조사자료를 활용할 시, 조사별 활용목적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세부범위 공표가 불가능한 경우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고 공표 등의 외부 유출에 주의하여야 함

2 PART

통계작성 기획

제1절 기본계획 수립

제2절 통계표 설계

제3절 통계작성 승인 신청

제4절 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

지역통계표준매뉴얼

영유아통계

02 통계작성 기획

제1절 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

- 통계작성 배경 및 필요성, 작성목적, 작성대상 등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
- 통계작성의 전반적인 추진업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작성체계 구축

작성개요

- 작성목적
  - 영유아기의 인구·보건·사회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영유아 통계를 작성하여 저출산 및 보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작성기준
  - 작성 기준년도 12월 31일 기준
  -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시점(6월 말 등) 및 인구총조사 기준(11월 1일) 등으로 작성 가능하나 12월 말 기준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

- 작성대상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및 해당 가구

- 작성 및 공표주기
  - 지속적으로 영유아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자체 예산 및 인력을 감안하여 2~3년 주기로 작성·공표

- 작성방법
  - 국가통계포털(KOSIS), SDC(통계데이터센터), MDIS(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기초로 구축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작성항목
  - 인구·가구, 인구이동, 인구동향, 경제, 건강, 복지, 보육/교육 등 분문별 항목

업무별 추진일정

추진 과제	주요 추진 업무	소요기간
통계작성 기획	통계작성 기획서 수립 (정책활용을 위한 협의회 및 자문단 구성)	1~2개월
통계작성 준비	작성항목 및 통계표 설계*	2~3개월
	통계작성 승인 신청	1~2개월
	행정자료 검토	2~3개월
	행정자료 입수	4~5개월
통계표 작성	지자체 및 공공기관 행정자료 활용	2~3개월
	집계표로 자료 입수	2~3개월
결과 분석 및 공표	결과보고서 작성	1~2개월
	결과공표 및 자료제공	1~2개월

* 기본항목(공통, 선택) 활용으로 작성항목 및 통계표 설계 소요기간 단축 가능

필요예산 관리

- 필요예산 산출 검토내역을 참고하여 산출

| 필요예산 산출 검토내역 |

구분		내용	검토내역	비고
작성준비	작성항목 설계	운영비	전문가 자문료, 간담회 비용	
		국내여비	전문가 자문 등 회의 여비	
		업무추진비	전문가 자문 등 간담회 비용	
통계 작성	행정자료 입수 및 연계	일용임금	업무보조원	모집인원×운용일수
		민간이전	4대 보험	일용임금×11%(30일 이상)
		운영비	PC 임차, 통신료 등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국내여비	행정자료 입수협의 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자료 입수협의 간담회	
결과분석 및 공표	결과분석	일용임금	업무보조원	모집인원×운용일수
		민간이전	4대 보험	일용임금×11%(30일 이상)
		운영비	PC 임차, 통신료 등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국내여비	보고서 검토협의 여비	
		업무추진비	보고서 검토협의 간담회	
	공표	운영비	보고서 발간비	인쇄단가×인쇄부수

* 통계청 및 외부기관 등 용역의뢰의 경우는 운영비, 여비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작성예시 | 필요예산 산출내역(예시)

| 영유아통계 예산* 내역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합계	20,000	
■ 일용임금	10,005	
– 업무보조원	10,005	76,960원×1명×130일(주휴수당 포함)
■ 운영비	6,974	
– 보고서 인쇄	3,000	
– 자문료	1,800	
• 작성항목 설계	600	200,000원×3명×1회
• 보고서 작성	600	200,000원×3명×1회
• 정책활용	600	200,000원×3명×1회
– 기타운영비 등 (사무용품, 홍보용품 등)	1,634	소모품, 홍보용품 구입
– 공공요금	400	단기전화 설치 및 통신료
– 특근매식비	140	7,000원×20일×1명
– 장비임차료	–	장비 임차료(기존 PC 활용)
■ 국내여비	1,320	
– TF 회의, 자문회의 등	528	132,000원(2명 기준)×4회
– 행정자료 입수	396	132,000원(2명 기준)×3회
– 관련기관 업무협의	396	132,000원(2명 기준)×3회
■ 업무추진비	600	
– 업무 협의회	600	업무협의(30,000원×5명×4회)
■ 민간이전	1,101	
– 산재, 고용, 국민, 건강	1,101	일용임금×11%

* 공무원 관리비(인건비)는 미포함, 민간 및 용역 시 추가예산 필요

제2절 통계표 설계

주요내용

- 공통항목을 포함하여 통계작성 목적에 맞게 항목 설계
- 관련 기관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항목 개발

2-1 통계표 체계

통계표 체계

- 통계표는 크게 기본통계표와 자율통계표로 구분
  - (기본통계표) 기본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통계표로, 필수적인 공통 통계표와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통계표로 구분
  - (자율통계표) 지자체의 특별한 목적이나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구성하는 통계표

기본통계표(공통/선택)

(단위: 개)

부문	기본통계표		합계
	공통통계표	선택통계표	
계	34	26	60
인구·가구	3	3	6
인구이동	7	0	7
인구동향	2	5	7
경제	2	5	7
건강	2	6	8
복지	3	2	5
보육·교육	12	1	13
안전	3	4	7

2-2 통계표 구성

기본통계표

- 기본통계표(선택통계표 포함)는 지역간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8개 부문의 60개 통계표로 구성
  - 영유아의 인구·가구, 인구이동, 인구동향, 경제, 건강, 복지 등에 대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다양한 분류지표 구성

지자체 자율통계표 개발

- 기본통계표 이외에 별도로 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 자율통계표로 추가 가능
- 정책 추진 방향 설정 및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 (1단계) 통계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대내외 담당부서 등)
  - (2단계) 수요항목에 대응하는 자료원 발굴 및 확보가능성 검토
  - (3단계~끝) 행정자료 및 조사자료에 기반한 자율통계표 개발 및 제공

| 수요조사 서식(예) |

소속 (부서)	부문 명칭	작성 항목	용도	비고

적용 분류체계

- 산업분류체계(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대 분 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2-3 주요 통계표

기본통계표 현황(공통 및 선택)

부문	자료명	작성통계표	공통	페이지
인구·가구 (6)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인구 규모	○	58
		성별 영유아인구	○	59
		영유아수별 영유아자녀 가구	-	59
		거처종류별 영유아 가구	○	59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부모 양육유형 및 한부모 양육여부	-	61
		다문화 아동 여부	-	61
인구이동 (7)	국내인구이동통계	전입이동	○	63
		영유아 전입이동	○	63
		전입 전 거주지(시·도)	○	63
		전입 전 거주지(시·군·구)	○	64
		연도별 영유아 전출입인구	○	64
		전입사유	○	64
		전출사유	○	64
인구동향 (7)	인구동향조사	출생아 수	○	67
		다문화가구 출생아 수	-	67
		모 연령대별 합계출산율	-	67
		모 평균 출산연령	-	67
		연령대별 혼인율	-	67
		연령대별 이혼율	-	67
		사망자 수, 사망률	○	67

부문	자료명	작성통계표	공통	페이지
경제 (7)	고용보험	모성보호수급자	○	69
	주택소유통계	영유아가구 주택소유 현황	○	71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부모 맞벌이 여부	-	73
		영유아 부모 종사 기업체 근속기간	-	74
		영유아 부모 종사상 지위	-	74
		영유아 부모 종사 기업체 규모	-	74
		영유아 부모 종사 기업체 산업분류	-	74
건강 (8)	건강검진통계연보	영유아 건강보험 적용인구	-	76
		건강검진 종합판정 현황	○	77
		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	78
		구강검진 종합판정 현황	-	78
		영유아 평균 신장분포	-	79
		영유아 평균 체중분포	-	79
	인구동향조사	영유아 사망원인	○	82
		사고에 의한 영유아 사망	-	82
복지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영유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	83
	장애인등록인구	영유아 장애인등록 인구	○	86
		영유아 장애유형별 장애인등록인구	○	86
	보호아동현황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	88
		보호대상 아동 현황	-	88
보육·교육 (13)	보육통계	어린이집 일반 현황	○	90
		어린이집 설치 현황	○	90
		어린이집 보육영유아 현황	○	9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	90

부문	자료명	작성통계표	공통	페이지
보육·교육(13)	교육기본통계	유치원 일반 현황	○	92
		유치원 설치 현황	○	92
		유치원 원아수 현황	○	92
		유치원 교원수 현황	○	9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현황	-	93
	보육지원 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현황	○	95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현황	○	95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현황	○	9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현황	○	95
안전(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아동학대피해 건수	○	97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	97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	97
	교통사고 경찰DB	연도별 영유아 교통사고 사상자	-	98
		월별 영유아 교통사고	-	98
		요일별 영유아 교통사고	-	99
		시간대별 영유아 교통사고	-	99

자율통계표 현황(표준매뉴얼 사업참여 지자체 작성예시)

부문	자료명(원)	작성통계표
사회의식	지역사회조사	5년 이내 출산계획
		출산지원 정책에 필요한 서비스
		저출산 원인
		이상적인 자녀의 수
		보육문제 해결방안
	지역여성경제활동조사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만족도

제3절 통계작성 승인 신청

주요내용

-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해야 함
  - 통계작성 승인 작성절차,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변경승인 절차 등 참고

통계작성승인 제도

- 통계작성승인 제도의 취지
  - 유사･중복 통계작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고, 인력·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
  - 통계의 기술적 측면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제거

- 통계작성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처음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승인통계의 변경사항(작성년도, 주기, 통계표 구성 등)이 있는 경우 모두 사전 통계작성 승인 요건에 해당됨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통계작성 승인 요건
  - 기승인 통계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을 것
  - 통계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것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 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통계작성 승인 사항
  - 명칭, 종류, 목적, 사항, 대상, 기준시점, 기간, 주기, 방법, 자료수집체계, 분류, 기준, 조사표, 보고서식, 공표서식, 국제기준 준수 여부

통계작성 승인

- 승인 관련 부서
  - 광역시·도 단위: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 시·군·구 단위: 관할 지방청 지역통계과

- 통계작성 승인 절차도

처리절차	
통계작성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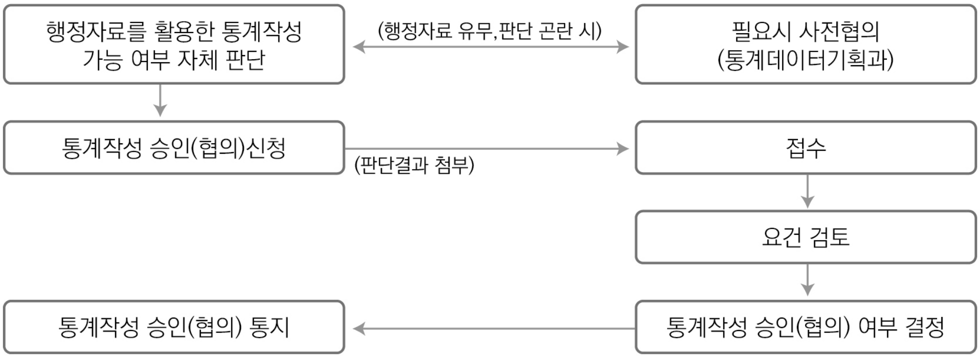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 해당 통계의 조사 등 자료수집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

통계법 시행령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제출방법) 공문발송(통계작성승인 신청서) 및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공문시행한 첨부물과 동일한 자료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추후 수정변경 사항은 시스템 내에서 실시

-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통계법 시행규칙 제12조)

  - 통계작성 승인(협의) 신청서(별지 제7호)
  - 첨부서류 등

    ①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 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③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

    ④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⑤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⑥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
      - 표본설계 요약서 첨부
      - 표본설계 내용 및 검토기준을 기술한 세부내역서(명세) 첨부 (예 : 표본설계 용역보고서, 표본설계 최종보고서 등)

    ⑦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여부 자체 판단 결과
      - 통계청장에게 판단의뢰를 한 경우 제출 불필요

    ⑧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참고자료 통계작성 승인(협의)신청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1. 5.〉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 [○] 승인신청서 /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조사 · 가공 통계) 7일(보고통계)

① 통계의 명칭 ○○군 영유아통계	② 통계의 종류: 일반 [○], 지정 [ ]
③ 통계작성 목적(근거 법률)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영유아 보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④ 통계작성 사항(주요 항목명 또는 작성 주요 통계표명) 인구·가구(6), 인구이동(7), 인구동향(7), 경제(7), 건강(8), 복지(5), 보육·교육(13), 안전(7)

⑤ 통계작성 대상	대 상: 개인 [○], 가구 [○], 사업체 [○], 그 밖의 대상 [ ]
	모집단: 해당없음
	대상 범위 및 규모: 20○○. ○○. ○○. 현재 ○○군 영유아인구 개인 및 영유아가구
	대상 지역: ○○도 ○○군

⑥ 통계작성 기준시점(기간)	기준년도 12. 31.(항목에 따라 상이함)
⑦ 조사(보고) 기간	해당없음
⑧ 작성 주기	○년

⑨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 ] 조사	[ ] 전수, [ ] 확률표본, [ ] 유의표본, [ ] 기타:
		[ ] 면접, [ ] 전화, [ ] 우편(팩스), [ ] 배포(유치) [ ] 집합, [ ] 인터넷, [ ] 관측, [ ] 기타:
	[ ] 보고	[ ] 행정집계, [ ] 행정조사
	[○] 가공	이용통계명: 주민등록, 주택소유통계, 장애인등록,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자료명: ○○군 사회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조사, 사망원인통계,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등

⑩ 통계작성 체계: 각 기관의 자료를 가공, 분석 (○○지방통계청 ↔ ○○군, 역할분담 및 협력)	⑪ 통계작성 분류체계 [○] 표준분류: 해당사항 없음, [ ] 그 밖의 분류:
⑫ 통계결과 공표: 작성년도 12월 말 (보고서 배부 및 홈페이지 게시)	⑬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 계획: 20○○년 ○월 중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

⑭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1. 예 [ ]→ 작성기준명:	2. 아니오[ ] 3. 해당없음[○]
	국제기구 제공 여부	1. 예 [ ]→ 국제기구명:	2. 아니오[○]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승인(협의)을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군 수 관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뒤쪽)

작성방법

④ 통계작성 사항: 조사(보고) 주요 항목, 주요 결과표명 등을 주요 부문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항목 수를 적습니다.
(예: 사업체 일반사항 ○개 항목, 고용 관련 ○개 항목, 급여 관련 ○개 항목 등)

⑤ 통계작성 대상

○ 모 집 단: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 모집단명을 적습니다.

○ 대상 범위 및 규모: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의 속성과 범위(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F 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전국의 84개 도시의 근로자 가구 등)를 적고, 규모는 작성대상이 되는 개인 · 가구 · 사업체수, 작성하는 기관 수 등을 적습니다.

○ 대상 지역: 전국 또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명을 적습니다.

⑨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방법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행정집계: 개인 ·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 문서열람 · 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⑩ 통계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 · 면 · 동 → 시 · 군 · 구(과/팀) → 시 · 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⑪ 통계작성의 분류체계: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교육분류,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한국표준건강분류)를 적습니다. 표준분류와 다른 경우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분류를 적습니다.

⑫ 통계작성결과의 공표예정일과 공표방법을 적습니다.

⑬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데이터를 통계청에 전송하는 일정을 적습니다.(예: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0000년 00월, 전송 예정일(0000년 00월))

⑭ 해당 통계 작성 시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체크합니다.

○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 준수하는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의 명칭을 적습니다.

○ 해당 통계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명을 적습니다.

· 여러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 모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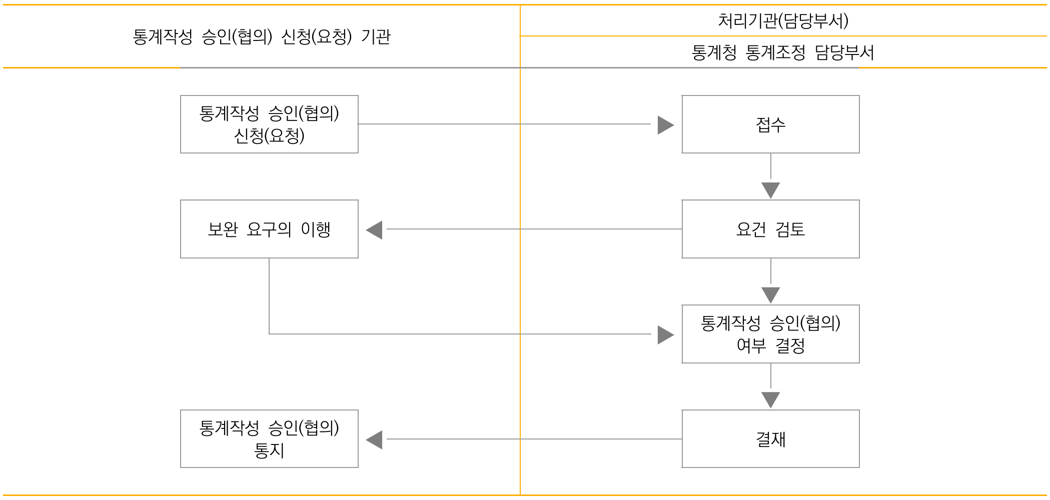

참고자료 **통계작성 기획서**

영유아통계 작성 기획서

1. 통계 개관

1 신청사유:

2 통계명(영문): 영유아통계(영문 :)

3 통계작성기관: ○○○(부서명)

- 인터넷 주소:
- 전화번호: ( ) -

4 통계의 종류

- 통계종류: 일반통계 또는 지정통계 중 해당되는 것 하나만 기입합니다.
- 통계작성방법: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중 해당되는 것 하나만 기입합니다.

5 작성연혁

- ○○○○년 ○○월: 최초 조사
- ○○○○년 ○○월: 제2회 조사
- ○○○○년 ○○월: 제3회 조사

2. 통계작성근거

1 작성목적: 통계작성 목적을 2~3줄 정도 요약하여 기입합니다.

2 관련법령: 통계작성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 조문을 기입하고 관련 법령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기입합니다.

3. 통계작성방법

1 작성대상: 통계작성 대상 및 범위와 대상 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작성항목: 작성항목 수 및 작성항목명을 기입합니다.

3 자료수집 체계: 자료를 조사(수집)하는 과정을 최초 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순차적으로 기입합니다.

④ 작성주기: 매월, 매년, 2년주기, 3년주기 등 해당 작성주기를 기입합니다.

⑤ 공표범위

- 지역: 시도, 시군구 등 공표범위가 시도인 경우 시도, 시군구까지인 경우 시도 및 시군구까지 기입합니다.
- 내용: 통계표에 나오는 주요 사항을 기입합니다.

4. 통계활용지원

① 공표주기: 매월, 매년, 2년주기, 3년주기 등 해당 공표주기를 기입합니다.

② 공표시점: 익년 8월, 익익년 3월 등 작성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기준년도 ○○년 ○○월로 기입합니다.

③ 공표방법: 보도자료, 보고서 발간 및 인터넷 게재

④ 국제기구 제출여부: 국제기구에 제출할 경우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기관명을 기입하고, 국제기구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이라 기입합니다.

5. 기 타

① 해당 통계예산: 해당 통계작성 예산을 천원단위로 기입합니다.

② 관련 통계명: 본 통계와 관련된 통계가 있으면 그 통계명을 기입합니다.

통계작성 변경승인(협의)

- 승인 관련 부서
  - 광역시·도 단위: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 시·군·구 단위: 관할 지방청 지역통계과

- 승인작성 변경승인(협의) 대상
  -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얻었거나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협의를 거친 통계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 및 협의를 거친 사항(통계법 시행령 제25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경우

  * 모집단, 작성항목 등 승인내용 중 일부라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승인이 필수적임

변경승인(협의) 대상	구체적 예시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통계명칭, 종류(일반통계/지정통계)
2. 통계의 작성 목적	근거법률 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조사항목 등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
4. 통계작성의 대상	모집단, 표본 대상범위, 대상지역 등
5. 기준시점 · 기간 및 주기	작성기준시점, 작성(조사)기간, 작성주기 등
6. 통계작성의 방법	조사(전수, 표본), 보고, 가공통계
7. 자료수집 체계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 (예: 시군구→시도→작성기관)
8. 분류 및 기준	표준(무역, 산업, 직업, 교육, 질병사인)분류 등
9. 조사표, 보고서식, 통계표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10.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여부	준수(작성기준 명) 또는 비준수

- 통계작성 변경승인 절차도

처리절차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협의요청) 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 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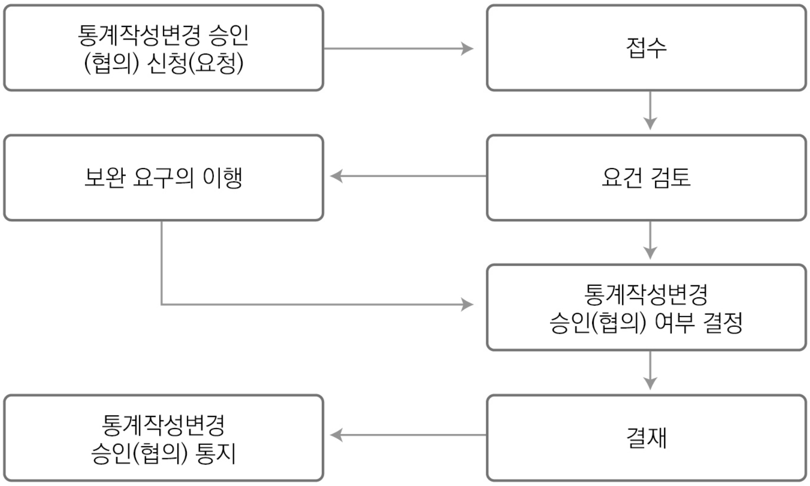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받은 사항을 변경승인(협의)을 받으려면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

통계법 시행령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 (제출방법) 공문발송(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및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공문시행한 첨부물과 동일한 자료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추후 수정 및 보완은 통계정책관리시스템 내에서 실시

● 변경 신청서 및 첨부서류(통계법 시행규칙 제14조)

-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신청서(별지 제8호)
- 변경 사항과 관련 첨부서류 등

①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 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 통계작성 승인신청사항을 전반적으로 기술한 통계개요 포함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③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

④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⑤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⑥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
  - 표본설계 요약서 첨부
  - 표본설계 내용 및 검토기준을 기술한 세부내역서(명세) 첨부
    (예 : 표본설계 용역보고서, 표본설계 최종보고서 등)

⑦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여부 판단 결과
  - 통계청장에게 판단의뢰를 한 경우 제출 불필요

⑧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참고자료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신청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11. 5.〉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변경 [ ] 승인신청서 /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설계 · 조사(보고) · 지수개편 변경) 5일(그 밖의 사항)

① 신청 통계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작성변경 연월일

②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③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변경 승인(협의)을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위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① 작성변경 연월일: 통계작성기관에서 해당 통계의 작성을 변경하려는 시기를 적습니다.
② 변경사항: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거친 통계에 대하여 변경 전과 후의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③ 그 밖의 참고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협의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통계에 관한 근거 법률의 개정 여부 등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협의요청) 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 담당부서

제4절 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

주요내용

- 행정자료 보유기관과 통계작성 목적, 보완 관리 등 협의
- 최소한의 자료 요구로 자료제공 기관의 부담 경감

4-1 행정자료 기본정보 수집

자료보유 기관과 통계작성 목적 등에 대하여 상호 공감대 형성

- 열악한 조사환경, 국민 응답부담 경감 차원,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등 사전에 공감대 형성 필요

행정자료 활용 관련법 및 개인정보보호 방법 설명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에 해당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보호됨을 설명

  * 단,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개인대체식별번호(PIN)로 변환 후 삭제하여 개인식별정보 입수 차단

최소한의 자료요청으로 제공기관의 부담 경감

- 자료제공 기관의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는 등 제공범위 등에 관한 협의 추진

활용 행정자료 기본정보 수집

- 행정자료별 레이아웃 및 속성 등 기본정보는 보유기관에서 사전에 입수하여 자료요청 및 입수 시 활용

4-2 행정자료 입수

행정자료 입수 절차

입수 절차	세부 내용
필요자료 파악	• 신규통계 생산에 필요한 행정자료 보유기관, 보유행정자료 및 활용 가능한 조사통계 등
입수계획 수립	• 기준시점, 입수범위, 입수방법, 입수항목 등 입수계획 수립
입수 협의	• 입수대상 행정자료에 대한 관련 법령, 서식 등을 검토 • 자료 보유기관과 입수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자료 입수	• 자료보유기관과 협의하여 문서로 요청
자료 활용	• 입수한 행정자료를 연계 방법에 따라 활용

행정자료 입수 시 문서상 요청사항

통계법 시행령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행정자료의 명칭
3.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
4. 행정자료의 내용(성별로 구분되는 행정자료의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된 내용을 말한다)과 범위
5.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6. 행정자료의 제공방법

행정자료 제공기관 및 주요 내용

부문	자료명	제공기관	주요 내용	입수시기*
인구·가구	인구·가구통계등록부	통계청	• 영유아가구 현황	12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통계청	• 부모 양육유형 및 한부모 양육 여부 • 다문화 아동 여부	연중**
인구이동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 전입·전출 현황	5월
인구동향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 모 평균 출산연령 • 혼인율, 이혼율 • 사망자수, 사망률	11월
경제	고용보험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모성보호수급자 현황	10월
	주택소유통계	통계청	• 영유아가구 주택소유 현황	11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통계청	• 부모 맞벌이 여부 • 영유아 부모 근속기간 및 종사장 지위 • 영유아 부모 종사 기업체 현황	연중**
건강	건강검진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 건강보험 적용인구 • 건강검진 종합판정 현황 • 구강검진 종합판정 현황 • 영유아 평균 신장·체중 분포	10월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영유아 사망원인	9월
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지자체	• 영유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담당자 협의
	장애인등록인구	지자체	• 영유아 장애인등록 인구	담당자 협의
	보호아동현황	보건복지부	• 보호대상 아동 현황	담당자 협의
보육·교육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현황	9월
	교육기본통계	한국교육개발원	• 유치원 현황	9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현황	보건복지부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	8월
	보육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만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7월
안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현황	11월
	교통사고 경찰DB	도로교통공단	• 영유아 교통사고	6월

* 행정자료별 입수시기는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입수시기 이후로도 원자료에 대한 검토·DB화 작업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자료입수 일정을 조정

** 아동가구통계등록부는 기준년도+2년 1월 이후 입수 가능

3 PART

통계표 작성

지역통계표준매뉴얼

영유아통계

03 통계표 작성

주요내용

- 통계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표 작성
- 타 기관 원자료 입수가 어려운 경우는 집계표로 자료 요청

행정자료 활용

부문	자료명	주요 내용	입수처	입수시기
인구·가구	인구·가구통계등록부	• 영유아가구 현황	통계데이터센터(SDC)	12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 부모 양육유형 및 한부모 양육 여부 • 다문화 아동 여부		연중*
인구이동	국내인구이동통계	• 전입·전출 현황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5월
인구동향	인구동향조사	•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 모 평균 출산연령 • 혼인율, 이혼율 • 사망자수, 사망률		9월/11월
경제	주택소유통계	• 영유아가구 주택소유 현황		11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 부모 맞벌이 여부 • 영유아 부모 근속기간 및 종사장 지위 • 영유아 부모 종사 기업체 현황	통계데이터센터(SDC)	연중*
건강	인구동향조사	• 영유아 사망원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9월

* 아동가구통계등록부는 기준년도+2년 1월 이후 입수 가능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입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지자체 행정자료 활용

- 지자체 주민등록인구현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활용하여 통계표 작성

부문	자료명	주요 내용
인구·가구	주민등록인구자료	• 인구 현황
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 영유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장애인등록인구	• 영유아 장애인등록 인구
보육·교육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현황 • 만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현황

집계표로 자료 입수

-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원자료 입수가 곤란한 경우는 집계표 형태로 요청
  - 대상자료, 집계기간, 집계단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계표의 표측 및 표두 항목 구분을 자세히 정의한 후 제공 요청

부문	자료명	제공기관	주요 내용	요청시기
경제	고용보험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모성보호수급자 현황	10월
건강	건강보험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월
복지	보호아동현황	보건복지부	• 보호대상 아동 현황	담당자 협의
보육·교육	보육통계		• 어린이집 현황	10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현황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	8월
	보육지원 사업		•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현황 • 만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현황	담당자 협의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현황	7월
	교육기본통계	한국교육개발원	• 유치원 현황	9월
안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현황	11월
	교통사고 경찰DB	도로교통공단	• 영유아 교통사고	6월

작성예시 | 집계표 요청 양식(예시)

가정양육수당 지원현황

(단위: 명, 천원, %)

구 분	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성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성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성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성비
20○○												
20○○												
20○○												
20○○												
20○○												

자료: ○○시·군「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현황

(단위: 명, 천원, %)

구 분	계			영아(만 0~2세)			누리(만 3~5세)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성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성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성비
20○○									
20○○									
20○○									
20○○									
20○○									

자료: ○○시·군「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4 PART

결과 분석

지역통계표준매뉴얼

영유아통계

04 결과 분석

주요내용

- 설계한 결과표에 따라 분석 결과를 집계하고, 유사 통계와 수준분석을 통해 결과표 확정
- 이용자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

관련 자료와의 수준분석

- MDIS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지표의 수치를 KOSIS 수치와 일치여부 확인
- 행정자료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집계표 형태로 입수한 통계표의 경우 간행물 및 공표자료와 비교하여 일치여부 확인

결과분석

- 정확한 통계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이용자 유의사항)
- 통계작성 목적에 부합하며 활용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별 통계표 구성 및 이용자료 등을 정리
-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텍스트나 표보다 그래프를 활용하여 정보 제공

유의사항

- 집계표에서 k-익명성 확보 여부 확인
- 직접 조사하지 않고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표기

-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자료의 범위 내에서만 집계가 가능하므로 작성시점, 작성기준 등 각 자료의 속성에 따라 자료 해석에 유의

- 일부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통계표 내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의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최근 자료를 수록

-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부호의 뜻은 아래와 같음
  - 『0.0』: 해당단위 미만
  - 『-』: 해당자료 없음

-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거나 수치가 5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로 표기함

최종보고서 수록 내용

항 목	수록내용
표제지	• 발간등록번호, 연도, 제목, 발행일, 발행처, 발행인, 국가통계 승인마크 및 승인번호
이용자를 위하여	• 이용시 유의사항, 통계작성대상연령, 통계작성기간 등, 문의처
목차	• 통계개요, 주요 활용 행정자료, 통계표, 결과 분석 등
통계개요	• 작성목적, 법적근거, 작성연혁, 작성주기, 작성기간, 결과 공표 등
활용 행정자료	• 행정자료명, 제공기관, 관련 주요 작성항목
작성통계표	• 통계표 파트(부록)에서 작성된 모든 통계표를 목차순으로 수록
주요 결과 요약	• 보고서의 부문별 결과에 앞서, 요약된 내용을 수록
부문별 결과	• 부문별, 작성항목별 통계가 나타내는 주요 수치, 그래프, 통계표 요약 수록
부록	• 통계표, 주요용어, 행정자료 서식

최종보고서 오류 점검 내용

부문	세부항목	점검내용
보고서 구성	표지	간행물번호가 제시되어 있는가?
		국가통계 승인마크 및 승인번호가 있는가?
	용어, 개요 등 설명	결과 요약(요약 보고서)이 기술되어 있는가?
		작성연혁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이용자를 위한 설명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자료 문의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보고서 발행정보	발행일, 발행처, 발행기관이 제시되어 있는가?
	기타	주요 용어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가?
		통계 결과물만 제시되어 있는가?
보고서 내용	행정자료 및 작성항목	주요 활용 행정자료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행정자료별 주요 작성항목이 제시되어 있는가?
	통계표 및 그래프	통계표(그래프) 형태의 일관성이 있는가?
		통계표(그래프)에 단위가 제시되어 있는가?
		수치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작성예시 | 이용자 유의사항

이용자를 위하여

- 「○○시·군 영유아통계」는 ○○시·군 각 과, 중앙행정기관 및 국내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행정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한 것으로 각 통계표마다 출처를 표기하였음

- 각 통계표는 지표의 성격 및 행정자료 입수 사정에 따라 시점(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통계표 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의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최근 자료를 수록하였음

-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아래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0.0」: 해당 단위 미만
  「–」: 해당 자료(숫자) 없음

-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거나 수치가 5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로 표기함

※ 본 보고서는 ○○시·군 홈페이지(https://oooo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록된 자료에 관한 문의는 ○○시·군청 ○○과(☎000-000-0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5 PART

자료공표 및 관리

제1절 **통계 이용자 서비스**

제2절 **개인정보 보호**

지역통계표준매뉴얼

영유아통계

05 자료공표 및 관리

제1절 통계 이용자 서비스

주요내용

- 통계이용자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 제공

통계포털 또는 홈페이지

- 통계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경로, 경로별 제공자료 유형 및 내용 등을 통계 이용자에게 안내
  - KOSIS(http://kosis.kr): 통계표
  - 지자체 홈페이지: 보도자료, 보고서, 통계포털 등
- KOSIS 통계표 수록을 위한 이용 방법
  - (담당 부서)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 (통계DB시스템) http://stat.kosis.kr/nsist

  ※ 자세한 사항은 통계DB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고(DB시스템 자료실에 수록)

담당자 연락처 정보

- 통계 담당자 또는 이용관련 문의 연락처(담당부서,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자에게 안내

통계설명자료 제공

- 각종 통계 설명자료(예: 메타정보, 방법론 보고서, 품질보고서 등)를 통계포털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통계설명자료 DB: http://meta.narastat.kr
  -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통계설명자료

제2절 개인정보 보호

주요내용

- 행정통계를 생산할 때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적·기술적 보완 대책 마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 통계법 제4조의3(국가 등의 책무),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개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비밀 보호 의무를 지고, 위반 시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등에 의하여 처벌 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통계응답자”라 한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자료 활용 시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부처 협의	• 통계법 제24조, 제33조 비밀보호의무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제외
제공 결정	• 제공기관이 원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암호화
자료 입수	• (온라인)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제공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오프라인) 개별 방문하여 보안 USB를 통한 저장 후 보안봉투에 봉인 후 제출
자료확인, 정제 및 DB 구축	• 담당공무원이 직접 입수자료 서버에 장착 • 개인식별번호를 보안번호로 변환 후 자료정제 및 DB 구축
통계작성 활용	•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한 행정자료 활용 • 개인PC로 다운로드 및 화면캡쳐 불가

행정자료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체계

- 행정자료 보완을 위해 인터넷망과 분리된 폐쇄망 구축

-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통제
  - 입수한 행정자료의 개인 식별번호는 암호화를 거쳐 보안식별번호로 대체
  -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의 암호화 및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의무

- 외주용역 사업 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용역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6

PART

부 록

1. 통계표 설명서

2. 주요 행정자료 서식

3. 작성계획(안)

4. 지역통계 표준프로세스 준수율 점검표(행정통계)

지역통계표준매뉴얼

영유아통계

부록 1 통계표 설명서

부문	인구·가구

자료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통계청	• 영유아가구 현황

자료 설명

- 통계청은 27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하는 인구총조사 등록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
- 인구·가구 통계등록부는 11. 1. 0시기준 대한민국에 상주(거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지만, 기해외체류, 국외이주, 이민, 사망, 국적상실, 말소자, 재외국민거주불명자, 거주불명등록자, 미상 등은 제외
- 인구부문 작성 시 단순한 현황 자료는 KOSIS 인구총조사 통계표 및 주민등록자료를 활용 가능하며,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사용 시 통계청과 협의 필요

주요 용어 설명

- 영유아자녀 : 0세~5세인 자녀
-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
- 단독주택 :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 아파트 : 5층 이상의 공동주택(4층 이하 아파트로 허가받은 건물, 주상복합아파트)
-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각 호별로 각각 분리하여 매매 가능)
-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비거주용 건물에 사람이 살되, 그 거주 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상가, 공장 등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주 공간
- 주택 이외의 거처 :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
  -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작성방법

- 통계청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자료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통계표 집계
- KOSIS 인구총조사 통계표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통계표 작성
  - 통계청 자료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 가구원 또한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주민등록자료와 차이가 있음

통계표 구성

공통

| 인구 규모 |

(단위: 명, %)

총인구	9세 이하		0~5세 (영유아)		6~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공통

| 성별 영유아인구 |

(단위: 명, %)

총인구(외국인 포함)	남성	구성비	여성	구성비	성비	영유아인구(0~5세)	남아	구성비	여아	구성비	성비	영유아인구 비율

선택

| 영유아수별 영유아자녀 가구 |

(단위: 가구, %)

영유아자녀 가구	구성비	1명	구성비	2명	구성비	3명 이상	구성비

주석: 1) 기준시점은 11월 1일
2) 영유아자녀 가구는 5세이하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로 전체 자녀수와 관계없이 5세이하 영유아수만 산출함
3) 영유아의 국적은 대한민국

공통

| 거처종류별 영유아 가구 |

(단위: 가구, %)

영유아가구	구성비	단독주택	구성비	아파트	구성비	연립주택	구성비	다세대주택	구성비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구성비	주택 이외의 거처	구성비

부문 | **인구·가구**

자료 |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통계청	• 부모 양육유형 및 한부모 양육 여부 • 다문화 아동 여부

자료 설명

- 아동가구통계등록부는 인구·가구통계등록부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만18세 미만)’을 기준으로 구축한 ‘아동 중심’의 모집단 자료
- 아동의 양육유형, 부모의 취업활동·육아휴직, 거처종류 등의 정보를 수록하여 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통계 작성 등을 지원

주요 용어 설명

- 아동의 부모 : 아동의 출생 당시 친부모가 아닌, 현재 같이 사는 부모를 반영(양육 부모)
  - 해당 아동의 출생 이후 발생한 부모의 사망 및 이혼 등 반영
  - 인구통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되, 출생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동과 따로 사는 부모(주말부부, 해외파견 등) 포착 및 반영
- 부모 양육유형 : 아동과 동거 여부 및 혼인자료를 활용하여 양부모양육, 한부모 부양육, 한부모 모양육, 부모 미양육으로 구분
- 다문화가구 : 귀화자가 있는 가구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
- 다문화 아동 여부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귀화자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등
  - 현재 양육 부모는 한국인이지만, 친부모가 외국인 또는 귀화자

작성방법

- 통계청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자료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통계표 집계
-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한 집계·공표는 시군구단위로 가능하나, 항목 중 부모 양육유형 (한부모 양육 포함), 다문화 아동 여부, 장애여부, 부모 이혼여부의 경우 시도단위로만 집계·공표 가능
- 아동가구통계등록부는 기준년도+2년 1월 이후 제공될 수 있음에 따라 12월 공표 시 해당 통계표는 기준년도-1년까지만 집계·공표 가능

통계표 구성

선 택

| 부모 양육유형 및 한부모 양육여부 |

(단위: 명, %)

영유아인구		양부모 양육		한부모 부양육		한부모 모양육		부모 미양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주석: 1) 기준시점은 11월 1일
2) 부모 양육유형
- 양부모 양육: 아동이 부모 모두와 같이 사는 경우, 부모 중 한명만 같이 동거하더라도 부부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포함
- 한부모 부양육: 부가 양육하고 모는 이혼·사망·주민등록말소·미상인 경우
- 한부모 모양육: 모가 양육하고 부는 이혼·사망·주민등록말소·미상인 경우
- 부모 미양육: 아동이 일반가구에서 부모 외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아동이 일반가구에서 남남과 동거하거나 혼자 사는 경우, 아동이 집단시설 또는 특별조사구에 사는 경우

3) 영유아의 국적은 대한민국

선 택

| 다문화 아동 여부 |

(단위: 명, %)

구 분	영유아 인구		다문화 아동 여부	
		구성비		구성비

주석: 1) 기준시점은 11월 1일
2) 영유아의 국적은 대한민국

부문	인구이동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 전입·전출 현황

자료 설명

- 읍면동에서 접수한 전입신고서 전산처리 결과를 중앙주민전산망센터에서 전국 자료를 취합하여 통계청에 전송하고, 통계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관련 통계표 및 마이크로데이터 작성
- 주민등록전입신고 → 읍·면·동→ 중앙주민전송망센터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중계시스템 → 통계청

주요 용어 설명

- 이동 :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 전입 : 행정구역 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 동일 읍면동 내 이동은 제외
- 전출 : 행정구역 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 동일 읍면동 내 이동은 제외
- 시도 간 이동 : 시도 경계를 넘는 거주지 이동
- 시도 내 이동 : 동일 시도내에서 시군구 경계를 넘어 이동한 경우
- 시군구내 전입 : 이동전후의 시군구는 같고 행정 읍면동이 다른 전입
- 시군구간 전입 : 이동전후의 시군구가 다른 전입
- 시도 간 전입 : 이동 전후의 시도가 다른 전입
- 기타 : 이동사항의 미신고, 지연신고

작성방법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통계표 집계
  - KOSIS 자료 활용(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인구·가구 –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표 구성

공통

| 전입이동 |

(단위: 명, %)

구 분	주민등록인구	전입인구	구·군내 전입[1]	구성비	구·군간 전입[2]	구성비	시·도간 전입[3]	구성비	전입인구 비율

주석: 1) 동일 시·군·구내 읍면동 간 전입으로 동일 읍면동내 이동은 제외
2) 동일 시·도 내에서 시·군·구간 이동
3) ○○시·도 외 타 시·도에서 ○○시·도로 전입

공통

| 영유아 전입이동 |

(단위: 명, %)

구 분	영유아 주민등록인구	영유아 전입인구	구·군내 전입1)	구성비	구·군간 전입2)	구성비	시·도간 전입3)	구성비	전입인구 비율

주석: 1) 동일 시·군·구내 읍면동 간 전입으로 동일 읍면동내 이동은 제외
2) 동일 시·도 내에서 시·군·구간 이동
3) ○○시·도 외 타 시·도에서 ○○시·도로 전입

공통

| 전입 전 거주지(시·도) |

(단위: 명, %)

구 분	시·도간 전입	구성비	서울	구성비	부산	구성비	대구	구성비	인천	구성비	광주	구성비

구 분	대전	구성비	울산	구성비	세종	구성비	경기	구성비	충북	구성비	충남	구성비

구 분	전북	구성비	전남	구성비	경북	구성비	경남	구성비	제주	구성비

※ 작성 시·군·구가 속한 시·도는 제외하고 작성

공통

| 전입 전 거주지(시·군·구) |

(단위: 명, %)

구 분	영유아 전입인구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동일 시·도 내 시·군·구별 전입인구 작성 (예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통

| 연도별 영유아 전출입인구 |

(단위: 명)

구 분	영유아 전입	영유아 전출	영유아 순이동

공통

| 전입사유·전출사유 |

(단위: 명, %)

구 분	영유아 전입(전출) 인구		직업		가족		주택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 분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부문 | **인구동향**

자료 | **인구동향조사**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 모 평균 출산연령 • 혼인율, 이혼율 • 사망자수, 사망률

자료 설명

- 신고인이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시·구에 제출, 해당 지자체에서는 4종 신고 이외에 기아발견조서, 실종선고, 혼인취소신고내용을 포함한 인구동향조사 관련 사항을 통계청으로 송부, 이를 토대로 통계 작성
  - 인구동향조사 조사표는 대법원 가족관계신고서와 동일한 서식을 이용, 가족관계신고서에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반영하고 신고인의 신고를 통해 자료 수집
- 인구동향조사 원자료는 통계청 MDIS에 연간자료 A형과 B형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A형은 시도와 연령, B형은 시군구와 5세 연령구간 자료로 외부에 제공

주요 용어 설명

- 출생 :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배출·만출한 것으로, 탯줄의 절단, 태반의 분리와 관계없이 모체로부터 분리 후 생명의 증거(호흡, 심장·제대의 박동, 수의근의 명백한 움직임 등)가 있는 경우
- 합계출산율 : 한 여자가 평생 동안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 혼인 :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 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 동거, 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반혼인율 : 특정 1년간에 신고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15세 이상 남자(또는 여자)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 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일반이혼율 : 특정 1년간에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15세 이상 남자(또는 여자)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작성방법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통계표 집계

- KOSIS 통계표 활용(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인구·가구 – 인구동향조사)

- 이혼건수를 혼인건수와 대비하여 이혼율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특정연도의 이혼건수를 혼인건수로 나눈 지표는 이혼비로, 이혼율과는 달리 혼인건수에 비해 어느정도의 크기만 보여주므로 "혼인 몇 쌍 중 몇 쌍 이혼" 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 시도, 시군구별 통계표 중 「출생·사망편」은 출생자·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이며, 「혼인·이혼편」은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단, 혼인, 이혼에서 남편, 아내를 별도로 집계한 통계표는 각각의 주소지 기준이며, 외국인과의 혼인, 이혼에서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주소지를, 외국인 남편은 한국인 아내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

통계표 구성

공통

| 출생아 수·다문화가구 출생아 수 |

(단위: 명)

구 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선택

| 모 연령대별 합계출산율 |

(단위: 가임여자당 1명당 명, 해당연령 여자인구 인구 1천명 당 명)

합계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선택

| 모 평균 출산연령 |

(단위: 세)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상	셋째 아	넷째 아 이상

선택

| 연령대별 혼인율·이혼율 |

(단위: 명, 인구 천명당 명)

구 분	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주석: 1) 혼인율=(해당연도 해당연령 남성(여성)인구의 혼인 건수/해당연도 해당연령 남성(여성) 주민등록 연앙인구) X 1,000(15세 이상)
2) 혼인율=(해당연도 해당연령 남성(여성)인구의 이혼 건수/해당연도 해당연령 남성(여성) 주민등록 연앙인구) X 1,000(15세 이상)

공통

| 사망자 수, 사망률 |

(단위: 명, 천명당 명)

구분	계												
		0~5세 영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주석: 1)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해당연도 사망자 수/해당연도 주민등록인구 X 100,000)

부문	경제	자료	고용보험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고용보험	한국고용정보원	• 모성보호수급자 현황

자료 설명

- 모성보호제도는 출산과 육아기의 휴가 휴직을 보장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노동 의무와 돌봄 의무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사산휴가가 있으며,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를 통해 소득을 보전한다
-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로 공문을 발송한 후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다

주요 용어 설명

-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해당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지급자수로 동일인이 해당 년에 여러번 출산전후휴가를 지급받은 경우 한명으로 계산
  - 해당년도에 중복을 제거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순수 수급자수로 여러 년도의 출산 전후 휴가 수급자수를 합하여 사용하면 안됨
- 육아휴직수급자: 해당년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지급자수로 동일인이 해당년에 여러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한명으로 계산
  - 해당년도에 중복을 제거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순수 수급자수로 여러 년도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를 합하여 사용하면 안됨
- 육아기근로단축수급자: 해당년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지급받은 지급자수로 동일인이 해당년에 여러번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한 명으로 계산
  - 해당년도에 중복을 제거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받은 순수 수급자수로 여러 년도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수급자수를 합하여 사용하면 안됨

-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해당년에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지급자수로 동일인이 해당년에 여러번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한명으로 계산
  - 해당년도에 중복을 제거하고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받은 순수 수급자수로 여러 년도의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수급자수를 합하여 사용하면 안됨

- 유사산휴가 수급자: 해당년에 유사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지급자수로 동일인이 해당년에 여러번 유사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한명으로 계산
  - 해당년도에 중복을 제거하고 유사산휴가급여를 받은 순수 수급자수로 여러 년도의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수를 합하여 사용하면 안됨

작성방법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원자료를 입수하여 통계표를 작성하거나, 원자료 입수 불가능 시 해당 기관에 집계표 형식으로 요청

통계표 구성

공통

| 모성보호수급자 |

(단위: 명, 천원, %)

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초회수급자		금액	초회수급자		금액	초회수급자		금액	초회수급자		금액	초회수급자		금액	초회수급자		금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부문	경제

자료	주택소유통계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주택소유통계	통계청	• 영유아가구 주택소유 현황

자료 설명

- 주택소유통계는 개인 및 가구별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주택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통계
  - 개인별 주택 소유 현황은 2012년 기준부터, 가구단위는 2015년 기준부터 작성(기준시점은 11월 1일)
-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국가·지자체·법인·외국인 등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가구별 소유 통계에서 일반가구를 구성하는 외국인(내국인과 함께 거주)이 소유한 주택을 대상에 포함
- 한 주택을 n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각각 1/n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주요 용어 설명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5인 이하 가구는 일반가구에 포함
- 가구의 주택 소유율 : 전체 일반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

$$\text{주택소유율} = \frac{\text{주택소유가구수}}{\text{일반가구수}} \times 100(\%)$$

- 주택 소유자 : 직접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대장 등에 등재된 법적 소유권자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
  - 주택의 요건: ①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②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③ 독립된 출입구,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 주택 이외의 거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거처로서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 (오피스텔,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작성방법

- 지역통계행정DB와 주택소유통계를 연계하거나, 인구통계등록부, 가구통계등록부, 주택소유통계를 연계하여 해당 통계표 집계

- 인구통계등록부에서 영유아 인구를 먼저 집계 ➜ 인구통계등록부의 가구주대체식별번호와 가구통계등록부의 가구주대체식별번호 연계 ➜ 주택소유통계의 가구주대체식별번호와 연계하여 통계표 작성

통계표 구성

공통

| 영유아가구 주택소유 현황 |

(단위: 호, 명, %)

구 분	일반가구 수	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	가구의 주택소유율

주석: 1) 영유아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일반가구 대상

06 부록

부문	경제

자료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통계청	• 부모 맞벌이 여부 • 영유아 부모 근속기간 및 종사상 지위 • 영유아 부모 종사 기업체 현황

자료 설명

- 인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만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아동명부를 구축하였으며 기준시점은 11월 1일
-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있는 영유아 부모의 정보(행정구역, 양육유형, 종사상 지위, 기업체 규모, 기업체 산업분류 등)를 이용
- 영유아 부모의 일자리정보(종사상 지위, 기업체 규모, 기업체 산업분류 등)는 복수 일자리를 가진 경우 소득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선정

주요 용어 설명

- 부모 맞벌이 여부: 양부모 양육인 경우에 한정하여 집계
  - 맞벌이: 양부모 양육이면서 부모가 모두 종사상 지위가 있는 경우
  - 외벌이: 양부모 양육이면서 부·모 중 한 명만 종사상 지위가 있는 경우
  - 모두 일하지 않음: 양부모 양육이면서 부모가 모두 종사상 지위가 없는 경우

  ※ 유의사항: 맞벌이의 경우 해당연도에 부·모 모두 취업활동 정보(종사상지위 등)가 있는 경우로 동일시점이 아님에 주의
- 근속기간: 한 기업에 동일 종사상지위로 계속 근무한 년월

- 종사상지위: 일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한 직장(일)과의 관계에 따라 상시근로자(특수고용자포함), 일용근로자,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로 분류
  - 상시근로자: 일용 외 임금근로자(임금근로명세서 활용), 의존계약자(특수고용업종)
  -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활용)
  - 자영업자: 개인기업 고용주 및 자영자,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명세서 활용)
- 기업체 규모: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한 기업통계등록부 기준 적용
  - 대기업(1), 중견기업(2), 중소기업(3), 소상공인(4), 제외(5)
- 기업체 산업분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고 기업이 복수의 산업 활동을 한 경우 부가가치가 큰 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작성

작성방법

-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자료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통계표 집계
- 아동가구통계등록부는 기준년도+2년 1월 이후 제공될 수 있음에 따라 12월 공표 시 해당 통계표는 기준년도-1년까지만 집계·공표 가능

통계표 구성

선 택

| 부모 맞벌이 여부 |

(단위: 명, %)

구 분	계		맞벌이		외벌이		모두 일하지 않음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선택

| 영유아 부모 종사 기업체 근속기간 |

(단위: 명, %)

구 분	부									
	계	구성비	1년 이내	구성비	1~3년 이내	구성비	3~5년 이내	구성비	5년 이상	구성비
구 분	모									
	계	구성비	1년 이내	구성비	1~3년 이내	구성비	3~5년 이내	구성비	5년 이상	구성비

주석: 1) 영유아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일반가구 대상

선택

| 영유아 부모 종사상 지위 |

(단위: 명, %)

구 분	부									
	계	구성비	상시 근로자	구성비	일용 근로자	구성비	자영업자	구성비	기타	구성비
구 분	모									
	계	구성비	상시 근로자	구성비	일용 근로자	구성비	자영업자	구성비	기타	구성비

주석: 1) 영유아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일반가구 대상

선택

| 영유아 부모 종사 기업체 규모 |

(단위: 명, %)

구 분	부									통계표 계속...		
	계	구성비	대기업	구성비	중견기업	구성비	중소기업	구성비	소상공인	구성비	제외	구성비
구 분	모											
	계	구성비	대기업	구성비	중견기업	구성비	중소기업	구성비	소상공인	구성비	제외	구성비

주석: 1) 영유아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일반가구 대상

선택

| 영유아 부모 종사 기업체 산업분류 |

(단위: 명, %)

구 분	부									통계표 계속...		
	계	구성비	00업	구성비	00업	구성비	00업	구성비	00업	구성비	00업	구성비
구 분	모											
	계	구성비	00업	구성비	00업	구성비	00업	구성비	00업	구성비	00업	구성비

주석: 1) 영유아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일반가구 대상

부문 건강 | **자료** 건강검진통계연보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건강검진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 건강보험 적용인구 • 건강검진 종합판정 현황 • 구강검진 종합판정 현황 • 영유아 평균 신장·체중 분포

자료 설명

- 전국 건강검진기관 및 공단 지사의 건강검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건강검진통계에 의해 축적된 보고통계 자료를 집계한 것임

주요 용어 설명

건강검진

- 대상인원 : 당해 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수
- 수검인원 : 당해 연도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수
- 양호 : 건강검진 결과 건강에 양호한 영유아
- 주의 : 건강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등 보호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다음연령검사에서 유의하여 보아야 하는 영유아
- 정밀검사 필요 : 건강검진 결과 즉시 치료를 요하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도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영유아

구강검진

- 정상A : 검진 결과 구강건강이 양호한 영유아
- 정상B : 검진 결과 구강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이습관 상담, 특수예방조치(불소도포, 치아홈 메우기, 전문가 구강 위생관리)등이 필요하며, 현재 맹출 중인 치아가 있는 경우
- 주의 :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나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
- 치료필요 : 우식치아가 있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작성방법

- KOSIS 자료 활용(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복지 / 복지 / 건강검진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참고하여 작성
- 생후 4개월에서 71개월 사이의 건강보험 대상자 중 당해 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자를 연도말 기준으로 발췌
- 구강검진 대상 : 18개월, 42개월, 54개월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당해 연도 구강검진 수검자

통계표 구성

선택

| 영유아 건강보험 적용인구 |

(단위: 명, %)

<table>
<tr><th rowspan="3">구 분</th><th colspan="2">의료보장 적용
영유아인구
(만0세 ~5세)</th><th colspan="6">건강보험 적용인구</th><th colspan="2" rowspan="2">의료급여 적용인구</th></tr>
<tr><th></th><th></th><th colspan="2"></th><th colspan="2">직장가입자</th><th colspan="2">지역가입자</th></tr>
<tr><th></th><th>구성비</th><th></th><th>구성비</th><th></th><th>구성비</th><th></th><th>구성비</th><th></th><th>구성비</th></tr>
</table>

공통

| 건강검진 종합판정 현황 |

(단위: 명, %)

구 분	계	구성비	양호	구성비	주의	구성비	정밀평가필요	구성비	지속관리필요	구성비

생후 14일~35일	구성비	양호	구성비	주의	구성비	정밀평가필요	구성비	지속관리필요	구성비

4~6개월	구성비	양호	구성비	주의	구성비	정밀평가필요	구성비	지속관리필요	구성비

9~12개월	구성비	양호	구성비	주의	구성비	정밀평가필요	구성비	지속관리필요	구성비

18~24개월	구성비	양호	구성비	주의	구성비	정밀평가필요	구성비	지속관리필요	구성비

30~36개월	구성비	양호	구성비	주의	구성비	정밀평가필요	구성비	지속관리필요	구성비

42~48개월	구성비	양호	구성비	주의	구성비	정밀평가필요	구성비	지속관리필요	구성비

54~60개월	구성비	양호	구성비	주의	구성비	정밀평가필요	구성비	지속관리필요	구성비

66~71개월	구성비	양호	구성비	주의	구성비	정밀평가필요	구성비	지속관리필요	구성비

선택

| 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

(단위: 명, %)

구 분	합계			생후14일~35일			4~6개월			9~12개월		
	대상인원 (A)	수검인원 (B)	비율 (B/A)	대상인원 (A)	수검인원 (B)	비율 (B/A)	대상인원 (A)	수검인원 (B)	비율 (B/A)	대상인원 (A)	수검인원 (B)	비율 (B/A)

구 분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대상인원 (A)	수검인원 (B)	비율 (B/A)	대상인원 (A)	수검인원 (B)	비율 (B/A)	대상인원 (A)	수검인원 (B)	비율 (B/A)	대상인원 (A)	수검인원 (B)	비율 (B/A)	대상인원 (A)	수검인원 (B)	비율 (B/A)

선택

| 구강검진 종합판정 현황 |

(단위: 명, %)

구 분	합계							18~29개월						
	대상인원 (A)	수검인원 (B)	비율 (B/A)	정상A	정상B	주의	치료필요	대상인원 (A)	수검인원 (B)	비율 (B/A)	정상A	정상B	주의	치료필요

구 분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						
	대상인원 (A)	수검인원 (B)	비율 (B/A)	정상 A	정상 B	주의	치료필요	대상인원 (A)	수검인원 (B)	비율 (B/A)	정상 A	정상 B	주의	치료필요	대상인원 (A)	수검인원 (B)	비율 (B/A)	정상 A	정상 B	주의	치료필요

선택

| 영유아 평균 신장분포 |

(단위: cm)

구 분	전체	생후14일~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선택

| 영유아 평균 체중분포 |

(단위: kg)

구 분	전체	생후14일~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부문	건강	자료	인구동향조사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영유아 사망원인

자료 설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과 통계법에 따라 전국 시군 및 읍면동에 신고된 사망신고서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영아, 모성, 태아사망 건에 대한 조사자료로 작성을 취합하여 통계청에 전송하고, 통계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관련 통계표 및 마이크로 데이터 작성

주요 용어 설명

- 사망원인 : 사망진단서에 기록되는 사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모든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함
- 사망원인별 사망률 :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어떤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표시(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수 / 연앙인구 * 100,000)
- 연령별 사망원인별 사망률 : 특정 연령의 사망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연령별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특정 연령의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수 / 특정 연령의 연앙인구 * 100,000)
- 악성신생물(암) : 정상세포 이외의 세포가 생체기능에 필요도 없이 증식하여 인접 정상조직을 파괴하고 기계적, 내분비적, 화학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며 원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해서 증식하는 능력을 가진 질환군을 총칭(질병분류코드: C00~D48)
-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 내분비샘(하수체 부신, 갑상샘, 성샘 등)과 영양관련 및 대사성 질환(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소를 섭취하고 이를 체성분과 에너지원으로 저장 및 분해하여 생체활동을 행하는 것을 대사라 하는데 이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김)을 총칭(질병분류코드: E00~E90)

- 신경계통의 질환: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을 비롯한 신경계통에 질병이 생긴 경우(질병분류코드: G00~G99)
- 순환기계통의 질환 : 혈액의 순환에 관여하는 제기관(심장을 포함한 대순환·소순환계를 말함)에 질병이 생긴 경우를 총칭(질병분류코드: I00~I99)
-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질병분류코드 P00~P96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질병분류코드 Q00~Q99
- 사고 사망원인 분류

사고유형	사망원인	예시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
비의도적 사고	운수사고	자동차·자전거·선박 등의 탑승자로서 충돌 등 충격으로 사망하거나, 보행자로서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오토바이 등에 충돌하여 사망(V01-V99) •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V01-V09) •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V10-V19) •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V20-V29) • 운수사고에서 다친 차량 탑승자(V30-V79)
	추락사고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 추락하여 사망(W00-W19) • 미끄러짐·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면상에서의 낙상(W01) • 타인에 의한 운반이나 지지를 받는 동안의 낙상(W04) • 침대가 관여된 낙상(W06) • 의자가 관여된 낙상(W07) •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낙상(W13)
	익사사고	강·바닷가·수영장·목욕탕 등에서 물에 빠져 사망(W65-W74) • 목욕통 익사 및 익수(W65, W66) • 수영장 익사 및 익수(W67, W68) • 자연수 익사 및 익수(W69, W70)
	질식사고	베게 등의 물체에 호흡기관이 막히거나 음식물·구토물 등으로 기도가 폐색되어 사망(W75-W84) • 침대에서 질식(W75) • 위 내용물의 흡입(W78) • 기도폐색의 원인이 된 음식물의 흡입 및 섭취(W79)
	화재사고	연기·불 등에 노출되어 사망(X00-X09)
	중독사고	연탄가스·농약 등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망(X40-X49)
	기타사고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 이외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타살 제외)(W20-W64, W85-W99, X10-X39, X50-X59, Y10-Y89)
의도적 사고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X60-X84)
	타살	유기·학대 및 가족 동반자살 등에 의한 사망(X85-Y09)

작성방법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표 집계
- KOSIS 통계표 활용(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복지 / 보건 / 사망원인통계)
- 마이크로데이터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최근 N개년 합산 사고에 의한 영유아 사망원인 작성

통계표 구성

공통

| 영유아 사망원인 |

(단위: 명, %)

구 분	영유아 사망자수		신생물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신경계통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주석: 1) 영유아 사망은 만 0~5세 사망자를 의미함

선택

| 사고에 의한 영유아 사망 |

(단위: 명, %)

구 분	합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질식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타살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주석: 1) 사례수가 적은 경우, 사망률 산출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문 | 복지

자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지자체	• 영유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자료 설명

- 해당 자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의한 축적된 행정통계 자료를 집계한 것임
- 각 분야별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작성한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취합하여 최종 작성

주요 용어 설명

- 기초생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작성방법

- 지자체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통계표 작성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참고

통계표 구성

공통

| 영유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

(단위: 명, %)

구 분	영유아 인구	영유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수급 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부문 | 복지

자료 | 장애인등록인구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장애인등록인구	지자체	• 영유아 장애인등록 인구

자료 설명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고 공단심사를 거쳐 장애판정을 받아 등록된 장애인 자료
- 각 분야별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작성한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취합하여 최종 작성

주요 용어 설명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
- 장애유형 : 장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며, 신체적 장애에는 다시 외부신체기관과 내부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로 구분됨
  - ① (외부 신체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② (내부 신체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③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④ (정신장애)정신
- 지체장애 : 다방면에 걸쳐서 발생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일상생활 활동의 제약을 초래하는 신체적 기능의 손상. 골격, 근육, 신경계 중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신체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
-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상지와 하지의 마비가 나타나 주로 보행 장애와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을 받게 되는 장애
- 시각장애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태

- 청각장애 : 소리와 말을 듣는 귀 즉 외이, 중이, 내이로 연결되어지는 청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하는 상태
- 언어장애 : 신체적인 원인 또는 뇌기능의 장애. 심리적 원인으로 언어의 발달이 느리거나 언어 관련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 이것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
- 안면장애 : 얼굴, 목, 머리에 눈에 띄는 수술이나 외상 후에 생긴 흉터, 그 흉터가 커지고 함몰되거나 어느 조직 하나가 없어지거나 색소침착, 모발결손이 생기는 장애
- 신장장애: 신장의 기능 저하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이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
- 심장장애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
- 간 장애 : 간 기능의 손상이나 이상으로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
- 호흡기장애 : 호흡이 그 운동과정 및 폐에 이상이 생기고 결국 산소-이산화탄소 교환과정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장애
- 장루, 요루 장애 : 장이나 항문이 기능이 못하고 방광도 제 기능을 못 할 때 각각 장루와 요루라는 것을 만들어 각각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것
- 뇌전증 장애 : 간질이라고도 하며 뇌에 있는 수억 개의 뇌세포들이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애
- 지적 장애 : 지적 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상태
- 자폐증 :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일어나지 않는 아동기 증후군으로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같은 상태
- 정신 장애 : 정신 기능에 이상을 나타내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

작성방법

- 지자체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통계표 작성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 / 현황 / 장애인 등록 현황) 참고

통계표 구성

공통

| 영유아 장애인등록 인구 |

(단위: 명, %)

구 분	영유아인구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공통

| 영유아 장애유형별 장애인등록인구 |

(단위: 명, %)

구 분	장애인등록 영유아인구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주석 1)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
2)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뇌전증장애
3) 발달장애: 지적, 자폐성 장애

부문	복지	자료	보호아동현황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보호아동현황	보건복지부	• 보호대상 아동 현황

자료 설명

- 당해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아동을 보호조치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자료를 작성, 당해 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 자료를 시·도별로 취합하여 작성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현황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양육 및 지원 중인 대상자 현황

주요 용어 설명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 비행·가출 부랑아 : 비행청소년으로 법원에서 의뢰하였거나 비행을 할 우려가 있어 보호자가 시설에 입소 의뢰한 아동 및 가정의 결손·결함 등으로 인한 가출 또는 부랑 아동
- 부모빈곤, 실직 : 저소득층 빈곤가정의 아동으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 수 또는 보호자의 학대 및 친권박탈로 보호된 아동
- 가정위탁 :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발생 시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여 양육하는 제도

작성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호아동 현황을 참고하여 아동복지정책과로 집계자료 요청
  - 지자체에 보호조치 아동 현황 집계자료 요청한 후 보건복지부 입수 자료와 비교 검증

통계표 구성

선 택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

(단위: 명, %)

구 분	시설현황			보호인원			보호아동현황									
	시설 수	종사자 수	정원	계	남자	여자	계	미취학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구성비	0~3세 미만	3~6세 미만					

선 택

| 보호대상 아동 현황 |

(단위: 명, %)

보호대상 아동 발생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계		유기		미혼부 모혼외 자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보호조치 현황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계		시설 입소		가정 보호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주석 1) (연령) 만 18세 미만

부문 | 보육·교육

자료 | 보육통계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현황

자료 설명

- 시군구 및 보육시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시설 및 이용아동 현황자료

주요 용어 설명

-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 보육시설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 국·공립 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법인 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부모협동 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가정 보육시설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직장 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민간 보육시설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외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법인외 보육시설, 민간개인 보육시설)

작성방법

- 시군구 및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추출하여 작성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보육통계의 시군별 보육 아동수에는 6세 아동이 포함되어 0~5세 보육 영유아수 자료 요청
  - 시도별 교직원 현황은 수록되었으나 시군별 교직원 현황 미수록되어 자료 요청

통계표 구성

공통

| 어린이집 일반 현황 |

(단위: 개소, 명, %)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공통

| 어린이집 설치 현황 |

(단위: 개소, %)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공통

| 어린이집 보육영유아 현황 |

(단위: 명, %)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공통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

(단위: 명, %)

구 분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간호사		조리원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주석 1) 치료사, 사무원은 기타에 포함

부문 | 보육·교육

자료 | 교육기본통계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교육기본통계	한국교육개발원	• 유치원 현황

자료 설명

- 교육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자의 교육 기초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통계
- 행정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하여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을 거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집계 발표

작성방법

-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의 교육기본통계에서 자료 발췌
  - 시군별 유치원 설치현황, 시군별, 성별, 연령별 유치원 원아수, 시군별 유치원 교원수 자료 요청
- 작성기준년도 자료 수록은 12월 말 예정이므로 시군별 자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문서로 집계자료 요청
- 유치원 설치, 교원 수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 ~ 당해 년도 4월 1일
- 유치원 원아수 : 전년도 3월 1일 ~ 당해 연도 2월 28일
- 교원수에 휴직·파견 교원 및 기간제 교사는 포함하고 퇴직교원과 강사는 제외됨
- 일반교사 :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통계표 구성

공통

| 유치원 일반 현황 |

(단위: 개소, 명, %)

구 분	계		
		국·공립	사립

공통

| 유치원 설치 현황 |

(단위: 개소, %)

구 분	유치원					
			국·공립		사립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공통

| 유치원 원아수 현황 |

(단위: 명, %)

구 분	유치원					
			국·공립		사립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공통

| 유치원 교원수 현황 |

(단위: 명, %)

구 분	계		원장		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간제교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부문 | 보육·교육

자료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현황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현황	보건복지부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

자료 설명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사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20조의5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 명칭·주소·상시(여성)근로자 수·보육 대상 영유아 수 또는 미이행 사유 등을 공표함

작성방법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 및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게시
  - 해당 명단을 보고 해당 지역 소재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확인
  - 설치의무대상 사업장 집계와 설치 의무 이행 사업장은 전국 단위로 집계하여 발표하므로 해당 지역 소재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과 설치 의무 이행 사업장 집계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

통계표 구성

선 택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현황 |

(단위: 개소, %)

구 분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설치의무 이행 사업장 등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공표)				미이행률
		구성비		구성비	설치·운영	위탁 보육	미공표		구성비	이행 등 (공표이후 이행조치)	미이행	

주석 1) 각 해당 연도 12.31. 기준

2) (설치·운영)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위탁보육)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육지원
(미공표) 영유아보육시행령(제20조의5)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설치대상이 된지 1년 미만, 설치 중, 보육수요 없는 경우)

부문 | 보육·교육

자료 | 보육지원 사업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보육지원 사업 현황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현황 • 만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현황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현황

자료 설명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
- 유치원(유아학비) 지원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만 해당하며, 정부지원보육료는 결재권자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원

주요 용어 설명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2세반)에게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

작성방법

- 자료 관련 지자체 담당 과 및 해당 기관에 집계자료 요청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 보건복지부
  -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 : 보건복지부

    * 유아학비 자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관련자료 입수
  - 아이돌봄서비스 : 여성가족부

통계표 구성

공통

| 가정양육수당 지원현황 |

(단위: 명, 천원, %)

구분	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구성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구성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구성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구성비

공통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현황 |

(단위: 명, 천원, %)

구 분	계			영아(만 0~2세)			누리(만 3~5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구성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성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성비

공통

|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현황 |

(단위: 명, 천원, %)

구분	계			3세			4세			5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구성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구성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구성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구성비

공통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현황 |

(단위: 명, 천원, %)

구분	아이 돌보미	계			시간제 이용 서비스(0~12세)			영아(36개월 이하) 종일제 이용 서비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구성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구성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구성비

부문	안전	자료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현황

자료 설명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집계한 결과임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만을 분석한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학대 현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주요 용어 설명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를 말함
- 성학대 :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며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유기 :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작성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매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공표
  - 전국자료는 1세별로 수록하였으나 시도별 1세별 자료는 미수록하여 해당 지역의 0세~5세 구간 1세별 집계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
  - 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은 전국자료는 수록하였으나 해당 지역 자료는 미수록하였고, 연령 구간은 1세미만, 1~3세, 4~6세... 로 수록하여 해당 지역 영유아(0세~5세)의 학대사례 유형 집계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

통계표 구성

공통

| 아동학대피해 건수 |

(단위: 건, %)

계		0~5세								6~9세		10~12세		13~15세		16~17세	
	구성비		구성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공통

|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

(단위: 건, %)

구분	계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학대		방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공통

|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

(단위: 건, %)

구분	계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학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부문	안전	자료	교통사고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교통사고 경찰DB	도로교통공단	• 영유아 교통사고

자료 설명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집계

작성방법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수록된 교통사고 경찰DB에서 발췌
  - 연령 구간이 6세 이하로 수록되어 도로교통공단에 0세~5세 집계자료 요청
- 부상자수는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

통계표 구성

선택

| 연도별 영유아 교통사고 사상자 |

(단위: 건, 명, %)

구 분	발생건수	계			0~5세			6~12세		
		사망자수	부상자수	구성비	사망자수	부상자수	구성비	사망자수	부상자수	구성비

선택

| 월별 영유아 교통사고 |

(단위: 건, 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선택

| 요일별 영유아 교통사고 |

(단위: 건, 명)

구 분	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선택

| 시간대별 영유아 교통사고 |

(단위: 건, 명)

계	0~2시	2~4시	4~6시	6~8시	8~10시	10~12시	12~14시	14~16시	16~18시	18~20시	20~22시	22~24시

부록 2 주요 행정자료 서식

1. 전입신고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1. 28.〉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이 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입자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에 살던 곳	(시 · 도) (시 · 군 · 구)		※ 시 · 도, 시 · 군 · 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세대주 성명(※ 세대주가 신고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전입 사유 (※주된 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읍 · 면 · 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 · 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2.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작성방법

1.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2.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 · 층 · 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 층 ·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5.3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휴대전화[2]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 · 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3]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4]: ________, ________								
	3. 국외출생자명[5]: __________, __________ 4. 복수국적자명[6]: __________, __________								

부양의무자[7]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8]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3),4) 해당자에 한함
5),6) 아동수당,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7)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8)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9] [ ]기타[10])	
	[ ]교육급여 (바우처 제공)	※ 유의사항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보결정된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을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 ]영아수당(현금) (대상자 이름 :)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 · 청소년	[ ]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 · 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 · 입소 [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11]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 · 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 [ ]KT [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가족 사항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 · 재산 · 근로능력 · 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 · 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 · 국세 · 지방세, 토지 · 건물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출입국 · 병무 · 보훈급여 ·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4쪽 중 3쪽)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 · 신용 · 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7. 영아수당(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 · 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 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2]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교육감 귀하

9) 민간 · 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10)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4쪽 중 4쪽)

<table>
<tr><th colspan="4">안 내 사 항</th></tr>
<tr><td>처 리
기 한</td><td colspan="3">-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영아수당(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td></tr>
<tr><td rowspan="8">관 계
법 률</td><td colspan="2">보장구분</td><td>해당 법률</td></tr>
<tr><td colspan="2">기초생활보장</td><td>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 · 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td></tr>
<tr><td colspan="2">영유아</td><td>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td></tr>
<tr><td colspan="2">아동 · 청소년</td><td>초 · 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td></tr>
<tr><td colspan="2">노인</td><td>기초연금법</td></tr>
<tr><td colspan="2">장애인</td><td>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td></tr>
<tr><td colspan="2">한부모가족</td><td>한부모가족지원법</td></tr>
<tr><td colspan="2">기타</td><td>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td></tr>
<tr><th colspan="3">신청시 구비서식</th><th>추가 제출서류</th></tr>
<tr><td colspan="2">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3],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td><td>소득 · 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td><td rowspan="2">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 ·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 · 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td></tr>
<tr><td colspan="2">노인, 아동 ·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자산형성)</td><td>소득 · 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td></tr>
<tr><td>제출하는 곳</td><td colspan="3">관할 시 · 군 · 구청(읍 ·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td></tr>
</table>

13)「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3. 출생 신고서

[양식 제1호]

출 생 신 고 서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출생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성별	1남 2여	*1혼인중의 출생자 *2혼인외의 출생자
		한자 (성) / (명)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1자택 2병원 3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부모	부 성명	(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기타사항							
⑤신고인	*성 명	㉑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1부 2모 3동거친족 4기타(자격:)					
	주 소						
	*전 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 졸업학교	부	1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모	1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인)		

4. 사망 신고서

[양식 제19호]

사 망 신 고 서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망자	성명	*한글	(성) /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1남 2여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관계	의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장소	장소				
		구분	1 주택 3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5 도로 7 산업장 9 병원 이송 중 사망 10 기타( )	2 의료기관 4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6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8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② 기타사항						
③ 신고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1동거친족 2비동거친족 3동거자			*관계	
		4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이메일	
④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졸업학교	1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 혼인상태	1 미혼 2 배우자 있음 3 이혼 4 사별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인)	

5. 혼인 신고서

[양식 제10호]

혼 인 신 고 서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혼인당사자(신고인)	성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②부모(양부모)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④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⑤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요□					
⑥기타사항								
⑦증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⑧동의자	남편	부 성명	㉮ 또는 서명		후견인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아내	부 성명	㉮ 또는 서명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⑨신고인 출석여부			1 남편(부) 2 아내(처)					
⑩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 구 동 향 조 사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동거		
㉯혼인종류	남편	1초혼 2사별 후 재혼 3이혼 후 재혼	아내	1초혼 2사별 후 재혼 3이혼 후 재혼
㉰ 최종 졸업학교	남편(부)	1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아내(처)	1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 직업	남편(부)	1 관리직 2 전문직 3 사무직 4 서비스직 5 판매직 6 농림어업 7 기능직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9 단순노무직 10 군인 11 학생·가사·무직	아내(처)	1 관리직 2 전문직 3 사무직 4 서비스직 5 판매직 6 농림어업 7 기능직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9 단순노무직 10 군인 11 학생·가사·무직

6.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이혼당사자(신고인)	성 명	한글	* (성) / (명)		㊞ 또는 서명	*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모(양부모)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기 타 사 항								
④재판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권자 지정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1부 2모 3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1 협의 2 재판	1부 2모 3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1 협의 2 재판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1부 2모 3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1 협의 2 재판	1부 2모 3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1 협의 2 재판

⑥신고인 출석여부	1 남편(부) 2 아내(처)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 19세 미만 자녀 수		명
㉯ 실제 이혼 연월일	년 월 일부터			

㉱ 최종 졸업학교	남편(부)	1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아내(처)	1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 직업	남편(부)	1 관리직 2 전문직 3 사무직 4 서비스직 5 판매직 6 농림어업 7 기능직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9 단순노무직 10 군인 11 학생·가사무직	아내(처)	1 관리직 2 전문직 3 사무직 4 서비스직 5 판매직 6 농림어업 7 기능직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9 단순노무직 10 군인 11 학생·가사무직

7.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2. 9. 6.〉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본인)	성명	여권상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복지욕구	[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 [ ]간접적 소득(감면 등) [ ]건강 및 의료 [ ]고용 [ ]주거 [ ]일상생활 [ ]보육 및 교육 [ ]문화 및 여가 [ ]안전 및 권익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비고
[ ]장애인등록 신청		[ ]신규 [ ]조정 [ ]재판정	·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기타 · 반납사유 [ ]사망 [ ]양도 · 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 ] 포함 [ ] 미포함 [ ] 신용 기능 [ ] 직불 기능	[ ]신규 [ ]재발급 [ ]정보변경 [ ]반납	
[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 ]정보변경 [ ]반납	
[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 · 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거주시설 입소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 ] 진단서 발급비 [ ] 검사비	

[감면서비스 (대행)신청]

[ ]휴대전화요금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료 [ ]TV 수신료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타기관 서비스 의뢰]

[ ]고용 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성공패키지 [ ]직업훈련 [ ]직업진로상담 [ ]취업지원 및 상담 [ ]직업생활 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용카드 · 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청인	[ ]본인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본인과의 관계:)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전자우편( )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7일 중에서 선택)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기존 장애인등록증 발급기관		첨부 (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 시설	단체 ·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 ·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 · 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 · 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가장 최근에 교부받은실적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금액 (지원금액)		계좌번호/금융기관/예금주 (관계)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4쪽 중 제3쪽)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3.5cm×4.5cm) 1장 ※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장애 정도 심사 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판정하기 위해 이전 심사 시 공단에 제출한 자료,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 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빙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 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1.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	1. 수급자의 복지계좌 통장사본 1부 2. 진단서 발급비 · 검사비 영수증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개인정보 제공 · 처리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 등록에 따른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장애인대상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유형·장애 정도에 관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사전 신청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 희망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 받기 위한 서비스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수급자격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 추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다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때까지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 자료나 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안내 및 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란에 "√"표시하고 자동차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의 정보를 적습니다.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가. 신청기관 방문 또는 주민등록기관 방문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상이)
   다.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장애인등록증이 발송되며, 해당 주소로 발송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급 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등기우편 발송이 가능하며, 등기우편 발송 시 반송지는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재발급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7. 본인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8. 본인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장기이식 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 정도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를 조회 · 제공 · 이용 및 장애 정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쪽 중 제4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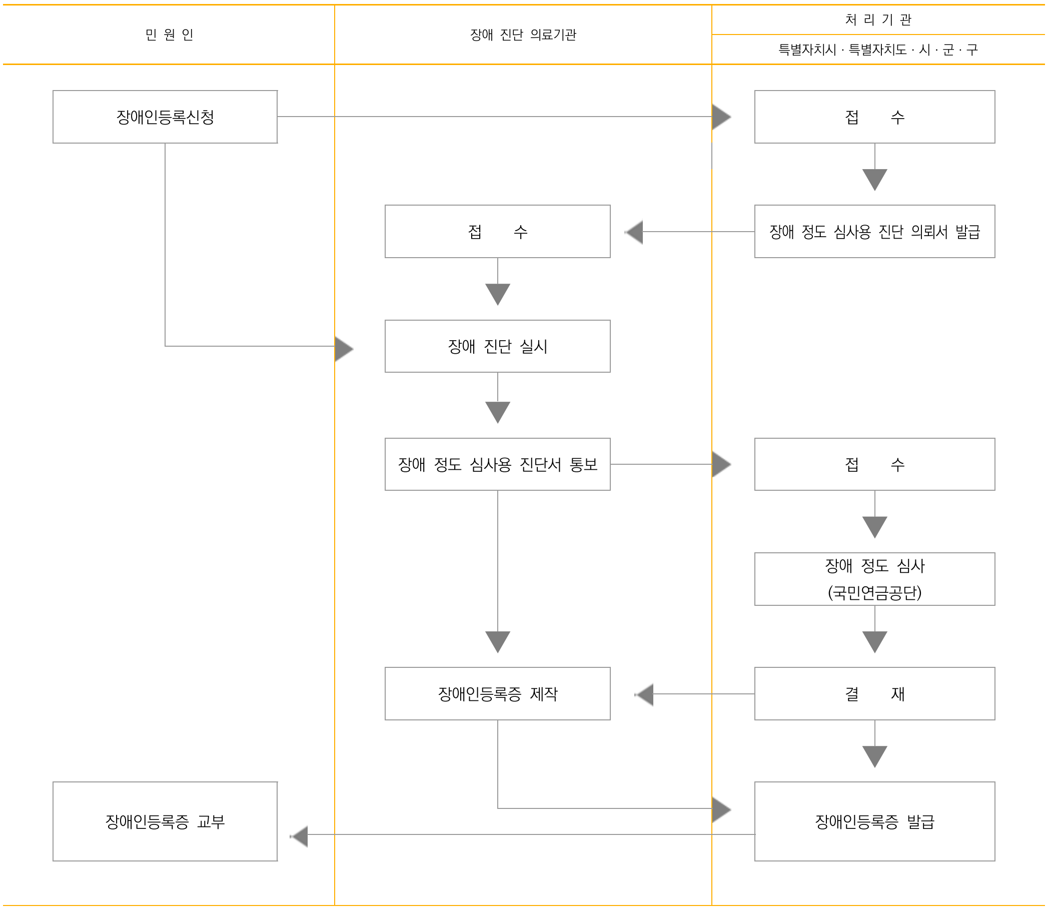

부록 3 작성계획(안)

『○○시(군) 영유아통계』 작성계획(안)

0000. 0.

작성기관

목 차

Ⅰ.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2. 추진 목적
3. 추진 경과

Ⅱ. 세부 추진계획

1. 작성 개요
2. 작성 분야 및 지표
3. 행정자료 입수처 및 방법
4. 행정통계 작성 업무흐름도
5. 행정자료 정제 및 통계작성용 자료 구축
6. 세부 추진일정
7. 소요 예산

Ⅲ. 기대효과

I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 **(통계기반 정책방향 제시)** ○○시(군) 주요공약사업 중「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 실현」의 세부계획인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아동돌봄 체계강화’ 등과 관련된 통계기반 정책방향 제시 필요

- **(저출산 및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시(군)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구, 경제, 복지, 보육 등 해당 생애주기의 전반적 사회상황을 진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추진 목적

○○시 영유아통계 작성 시사점

- 기관 간 공유, 협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공유
- 지역정책에 부응하는 실효성 높은 통계자료 생산
- 저비용 · 고효율의 경제적 통계생산으로 인한 통계개발 필요성 인식 및 활용성 강화

- **(통계기반 정책수행)** 지방자치시대 효율적 정책 수립과 정책평가를 위한 통계기반의 정책수행 유도

- **(정책 맞춤형 통계 제공)** 영유아 보육·교육사업의 기초자료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

- **(삶의 질 향상 기여)** 영유아기의 인구·보건·사회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영유아 관련 통계를 생산·분석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저출산문제를 완화

- **(질적지표 개선)** 양적지표인 인구·가구, 경제, 보육·교육, 안전 등의 영유아 관련 지표제공으로 질적지표 개선에 기여

3 추진 경과

20○○년 영유아통계 관련 업무협의

- (주요내용) ○○시(군) 영유아통계 개발 추진 협의
  - 실무협의회 참여 및 ○○지방통계청 생산대행/기술지원 협의
- (일시/장소) 20○○. ○○. ○○.(○) 00:00~00:00 / ○○청 회의실
- (참석인원) ○○청 및 ○○시청 업무관련자 0명

○○시 영유아통계 TF팀 구성

- (주요내용) 영유아통계 기본방향 및 분석 주제 전반에 대한 사항 논의
- (구성인원) ○○청 및 ○○시청 업무관련자 0명
  - ○○청: ○○과 ○○팀장 외 0명
  - ○○시: ○○과 ○○팀장 외 0명

행정자료 선정 및 입수방법 논의

- 행정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행정자료 보유 기관들과 협의
- ○○청 및 ○○시청 보유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입수기관 업무부담 최소화

조사목적에 부합한 통계표 설계

- 인구·가구, 인구이동, 인구동향, 경제, 건강, 등 8개 부문 00개 항목 설계
- 활용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항목 설계
- 설계된 통계표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II 세부 추진계획

1 작성 개요

작성 목적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역정책 수립 필요
- 저출산 및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통계 개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단위의 영유아통계 개발 필요성 대두

작성 기준일: 20○○. ○○. ○○.

※ 일부 자료는 제공기관 및 지표의 성격에 따라 대상기간(시점)의 차이가 있음

작성 대상: 20○○. ○○. ○○. 주민등록 기준 ○○시(군) 만 0~5세 이하의 영유아

작성 주기: 2년 (○○시 사정에 따라 1년 혹은 3년으로 변경 가능)

작성 방법: ○○시, 보건복지부 등 관련 행정자료 및 통계청 자료 가공

개발 방향

- ○○시(군) 영유아정책 담당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써 활용 가능성 제고
  - 맞벌이 가구 수, 영유아 부모의 직업, 양육자의 환경 관련 항목 통계표 구성
- 영유아통계 표준매뉴얼을 준용하여 ○○시(군) 자체 역량으로 통계작성이 가능하도록 항목 및 통계표 구성 체계화
- ○○시 영유아의 전반적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구성

2 작성 분야 및 지표

- **작성 분야**: 인구·가구, 인구이동, 인구동향, 경제, 건강, 복지 등 8개 부문 60개 지표

- **부문별 작성 통계표**

부문	자료명	작성 통계표	
인구·가구 (6)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인구 규모	성별 영유아인구
		영유아수별 영유아자녀 가구	거처종류별 영유아 가구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부모 양육유형 및 한부모 양육여부	다문화 아동 여부
인구이동 (7)	국내인구이동통계	전입이동	영유아 전입이동
		전입 전 거주지(시·도)	전입 전 거주지(시·군·구)
		연도별 영유아 전출입인구	전입사유
		전출사유	
인구동향 (7)	인구동향조사	출생아 수	다문화가구 출생아 수
		모 연령대별 합계출산율	모 평균 출산연령
		연령대별 혼인율	연령대별 이혼율
		사망자 수, 사망률	
경제 (7)	고용보험	모성보호수급자	
	주택소유통계	영유아가구 주택소유 현황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부모 맞벌이 여부	영유아 부모 종사 기업체 근속기간
		영유아 부모 종사상 지위	영유아 부모 종사 기업체 규모
		영유아 부모 종사 기업체 산업분류	
건강 (8)	건강검진통계연보	영유아 건강보험 적용인구	건강검진 종합판정 현황
		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구강검진 종합판정 현황
		영유아 평균 신장분포	영유아 평균 체중분포
	인구동향조사	영유아 사망원인	사고에 의한 영유아 사망

부문	자료명	작성 통계표	
복지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영유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장애인등록인구	영유아 장애인등록 인구	영유아 장애유형별 장애인등록인구
	보호아동현황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보호대상 아동 현황
보육·교육 (13)	보육통계	어린이집 일반 현황	어린이집 설치 현황
		어린이집 보육영유아 현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기본통계	유치원 일반 현황	유치원 설치 현황
		유치원 원아수 현황	유치원 교원수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현황	
	보육지원 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현황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현황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현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현황
안전 (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아동학대피해 건수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교통사고 경찰DB	연도별 영유아 교통사고 사상자	월별 영유아 교통사고
		요일별 영유아 교통사고	시간대별 영유아 교통사고

3 행정자료 입수처 및 방법

- **입수기준**: 0000. 12. 31. 기준 각 항목별 자료 입수

- **행정자료별 제공기관 및 입수 방법**

<table>
<tr><th>자료명</th><th>제공기관</th><th>입수처</th><th>입수시기</th><th>입수 방법</th></tr>
<tr><td>인구·가구통계등록부</td><td rowspan="5">통계청</td><td rowspan="2">통계데이터센터
(SDC)</td><td>12월</td><td rowspan="2">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분석 후 통계표 반출</td></tr>
<tr><td>아동가구통계등록부</td><td>연중</td></tr>
<tr><td>주택소유통계</td><td rowspan="3">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DIS)</td><td>11월</td><td rowspan="3">원격접근서비스(RAS)
시스템에서 분석 후
통계표 반출</td></tr>
<tr><td>국내인구이동통계</td><td>5월</td></tr>
<tr><td>인구동향조사</td><td>9월/11월</td></tr>
<tr><td>주민등록인구자료</td><td colspan="2" rowspan="4">○○시(군)</td><td rowspan="4">연중</td><td rowspan="4">원자료 형태로 입수 후 분석</td></tr>
<tr><td>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td></tr>
<tr><td>장애인등록인구</td></tr>
<tr><td>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td></tr>
<tr><td>고용보험자료</td><td colspan="2">한국고용정보원</td><td>10월</td><td rowspan="10">집계표 형태로 입수</td></tr>
<tr><td>건강보험자료</td><td colspan="2">국민건강보험공단</td><td>10월</td></tr>
<tr><td>보호아동현황</td><td colspan="2" rowspan="5">보건복지부</td><td>연중</td></tr>
<tr><td>보육통계</td><td>10월</td></tr>
<tr><td>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현황</td><td>8월</td></tr>
<tr><td>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td><td>11월</td></tr>
<tr><td>보육지원 사업 현황</td><td>연중</td></tr>
<tr><td>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현황</td><td colspan="2">여성가족부</td><td>7월</td></tr>
<tr><td>교육기본통계</td><td colspan="2">한국교육개발원</td><td>9월</td></tr>
<tr><td>교통사고 경찰DB</td><td colspan="2">도로교통공단</td><td>6월</td></tr>
<tr><td>건강검진통계연보</td><td colspan="2">국민건강보험공단</td><td>10월</td><td>제공 자료 활용하여 집계표
작성</td></tr>
</table>

4 행정통계 작성 업무흐름도

- **(행정통계 생산 추진과정)** 계획수립, 자료입수 및 검토, 자료처리 및 분석, 보고서작성 및 승인요청, 공표 및 자료제공 등 5단계로 나누어 추진

| 행정통계 작성 업무흐름도 |

계획수립 (3~4월)	→	자료입수 검토 (4~8월)	→	자료처리 분석 (7~10월)	→	보고서작성 승인요청 (8~11월)	→	공표 자료제공 (11월)
• 목적, 기대효과 • 유사통계 유무 • 항목 선정		• 자료 보유기관간 입수협의 • 결측값, 이상치, 중복자료 검사		• 자료 연계 및 분석용 DB 구축 • 자료 분석		• 분석결과 작성 • 보고서 작성 • 신규통계승인		• 결과 공표 • 보도자료 작성 • 간행물 발간
기획단계				생산단계				공표단계

- (기획단계) 통계작성의 필요성, 목적, 기대효과, 기존통계와의 유사성 여부 등을 검토
  - (계획수립) 통계작성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고 유사통계 유무 여부 검토 및 통계표 선정
  - (자료입수 및 검토) 행정자료 보유기관과 통계작성 목적 및 보안관리, 입수가능 행정서식, 내용, 보고체계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의 품질을 검토
- (생산단계) 입수자료를 연계하여 DB구축, 자료 분석 및 보고서작성, 신규통계 승인 등
  - (자료처리 및 분석) 입수 원자료를 통계목적에 맞게 연계 및 재구성하여 분석
  - (보고서작성 및 승인요청) 분석결과 통계표 작성 및 검토, 보고서작성 및 신규통계 승인요청
- (공표단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통한 최종 통계작성 공표, 관련 자료제공 등
  - (공표 및 자료제공) 결과 공표, 보도자료 작성 및 간행물 발간

5 행정자료 정제 및 통계작성용 자료 구축

행정자료 정제 및 DB 구축과정

1단계: 행정자료 입수 및 검토		→	2단계: 통계작성용 원시자료 생성	→	3단계: 통계 처리 및 DB 생성	
주민등록자료	복지		자료 통합연계		에디팅	마이크로데이터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세대주와의관계 전입시기 전입전 거주지 전입사유 등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장애인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구		• 행정자료 간 자료연계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 중복검사 • 에디팅 • 기준시점 전후 자료 첨삭	• 통계 기초자료 생성

- (1단계) 행정자료 입수 및 검토
  - (행정자료 입수) 인구, 경제, 복지 등 부문별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통계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행정통계 자료 입수
  - (자료별 검토) 자료의 레이아웃 및 파일설계서를 작성하여 변수명 등을 검토, 데이터 속성 분석
  - (통계적 보완) 중복검사, 항목 검사, 코드 유효성검사 등을 통해 자료의 결측값, 이상치 등의 오류 유형을 파악하여 원자료 정비

- (2단계) 통계작성용 원시자료 생성
  - (자료연계) 주민등록자료-복지 자료의 연계 변수(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로 자료를 병렬 병합

- (3단계) 통계 처리 및 DB 생성
  - 분석자료 유형

자료유형	자 료 명
DB 구축	주민등록,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등록자료,
집계표 활용	어린이집 이용자통계, 아동복지, 보호대상아동, 교육기본통계, 건강보험자료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가구 통계등록부, 인구통계등록부, 아동가구통계등록부, 국내인구이동, 인구동향조사, 주택소유통계, 사망원인, ○○시 사회조사

6 세부 추진일정

세부 추진일정

○○청-○○시(군) 영유아통계 개발 협의 (0000. 00.~0000. 0.)	- 행정통계 기본 개발 방향 등 업무 전반 협의 - 관련 정책부서 의견수렴 ·정책적 활용 목적에 부합한 개발 방향 제시
항목 선정 및 종합실시계획 수립 (0000. 0.~0.)	- 작성 항목 및 통계표 선정 ·기관 및 내부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검토 ·행정자료 취합 여부 확인
행정자료 입수 (0000. 0.~00.)	- ○○시 내부 행정자료(주민등록, 복지) 입수 - 기관별 집계표 양식 송부 및 입수 - 행정자료분석시스템 및 원격접근시스템을 통한 통계표 작성
자료 검토 및 DB 구축 (0000. 0.~00.)	- 입수된 행정자료 정제 및 검토 ·행정자료의 결측값, 이상치, 중복자료 등 검사 - 통계 처리 후 분석용 DB 생성
보고서 작성 및 승인요청 (0000. 0.~00.)	- 자료 분석을 통한 통계표 작성 -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 통계승인 요청
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표 (0000. 00.)	- 보고서 검수 및 보도자료 작성 - 결과보고서 발간 및 공표

주요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획 및 항목 선정, 통계표 설계												
- 각 기관별 행정자료 입수												
- 입수 행정자료 타당성 검토 및 협의												
- 자료 품질 보완(비매칭, 무응답 등)												
-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업무 협의 및 승인요청												
- 보고서 결과 보고 및 설명회 개최												

7 소요 예산

소요 예산

- 예산과목: 0000-000

(단위: 천원)

총 액	일용임금	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고용부담금
18,553	10,005	5,847	1,000	600	1,101

세부 산출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소요 예산	산출내역
소요 예산 총액	18,552,320	-
❍ 일용임금	10,004,800	-
업무보조원	10,004,800	76,960원×1명×130일
❍ 운영비	5,847,000	-
일반수용비	4,850,000	-
• 보고서 인포그래픽	2,000,000	-
• 심층분석 보고서 원고료	2,100,000	-
• 사무용품	150,000	30,000원×5명
• 자문료	600,000	200,000원×3명×1회
공공요금	500,000	단기전화 설치 및 통신료
매식비	497,000	7,000원×71일
❍ 국내여비	1,000,000	-
업무협의	1,000,000	-
❍ 업무추진비	600,000	-
협의회 및 간담회	600,000	사업별 600,000원 배분
❍ 고용부담금	1,100,520	-
4대보험 등 기관부담금	1,100,520	일용임금×0.11

Ⅲ 기대효과

○○청

- (저비용·고효율 통계생산)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통계 환경개선 및 행정자료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 (이용자 맞춤형 통계생산) 행정자료 연계 등을 통한 통계생산으로 지역통계 확충 및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

○○시(군)

- (정책 맞춤형 통계생산) ○○시(군) 영유아 현황을 파악하여 보육·교육, 복지, 건강 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통계기반 정책수행) 데이터 주도형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지역민의 양적 및 질적 지표 개선에 기여

부록 4 지역통계 표준프로세스 준수율 점검표(행정통계)

통계작성단계	표준프로세스 점검 체크리스트
1. 통계기획	①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작성계획을 수립했는가?
	② 통계작성계획에 통계 필요성,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 주기, 작성기준, 작성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③ 소요예산 산출 검토 내역을 참고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했는가?
2. 통계표 설계	① 관련 자료 입수 가능성을 파악하였는가?
	② 관련 자료 기본정보를 수집하였는가?
	③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기본통계표를 반영하였는가?
	④ 관련부서 수요조사,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자율통계표를 개발하였는가?
3. 행정자료 입수	① 최소한의 자료 요구로 자료제공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였는가?
	② 자료 제공기관과 입수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였는가?
	③ 원자료로 입수가 어려운 경우 집계표 형태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4. 통계표 작성	① 행정자료별 데이터 속성에 대해 검토 및 정비하였는가?
	② 고유 식별자(연계키)를 활용하여 해당 자료를 통계 작성용 데이터로 재구성하였는가?
	③ 통계표 작성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5. 결과분석	① 설계한 통계표에 따라 분석 결과를 집계하였는가?
	② 유사 통계와 수준분석을 하였는가?
6. 보고서 작성 및 결과공표	① 결과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하여 공표하였는가?
	② 이용자의 올바른 통계 해석을 위해 해석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는가?
	③ 통계 이용자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

표준매뉴얼 문의처 안내

지역통계 표준매뉴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통계청	전화번호
지역통계기획팀	042) 481-6988
경인지방통계청	02) 2110-7600
동북지방통계청	053) 609-6500
└ 강원지방통계지청	033) 258-3650
호남지방통계청	062) 370-6000
동남지방통계청	051) 850-3300
충청지방통계청	042) 366-8114

해당 지자체 관할 지방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통계청	관할 지역
경인지방통계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동북지방통계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강원지방통계지청	강원특별자치도
호남지방통계청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동남지방통계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지방통계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23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영유아통계

■ 발　　행: 2023년 12월
■ 발 행 인: 통계청장
■ 편 집 인: 조사관리국장
■ 총괄기획: 지역통계기획팀
■ 공동기획: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 발 행 처: 통계청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042-481-6988
■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발간번호: 11-1240000-001654-01

통계청